

第165回國會 政治關係法審議 特別委員會會議錄 第2號

大韓民國國會事務處

日 時 1993年11月26日(金)
場 所 政治關係法審議特別委員會

議事日程

1. 政黨法中改正法律案(申相式議員外 171人)
2. 政黨法中改正法律案(趙世衡議員外 96人)
3. 政治資金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申相式議員外 171人)
4. 政治資金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朴相千議員外 96人)
5. 公職者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案(申相式議員外 171人)
6. 公職選舉法案(趙世衡議員外 95人)
7. 政治關係法改正에 관한請願(紹介議員 姜信玉, 鍾路區 서영훈外 3人)

審査된案件

- | | |
|--|-----|
| 1. 政黨法中改正法律案(申相式議員外 171人 發議)..... | 1面 |
| 2. 政黨法中改正法律案(趙世衡議員外 96人 發議) | 1面 |
| 3. 政治資金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申相式議員外 171人 發議)..... | 1面 |
| 4. 政治資金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朴相千議員外 96人 發議) | 1面 |
| 5. 公職者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案(申相式議員外 171人 發議)..... | 1面 |
| 6. 公職選舉法案(趙世衡議員外 95人 發議) | 1面 |
| 7. 政治關係法改正에 관한請願(姜信玉議員의 紹介로 提出) | 28面 |

(14時14分 開議)

○委員長 申相式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65回國會 第2次 政治關係法審議特別委員會를 開議 하겠습니다.

먼저 報告事項이 있겠습니다.

立法調査官 報告해 주시기 바랍니다.

○立法調査官 朴阪生 報告를 드리겠습니다.

(報告事項은 끝에 실음)

○委員長 申相式 議事日程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上程하게 되는 法案에 대해서는 第1項부터 6項까지 一括해서 上程하고 提案說明과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를 듣게 되겠습니다. 다마는 民主黨에서 提案한 公職選舉法案은 우리 委員會에 오늘 回附되어 현재 對比表 등 作業이 進행중에 있으므로 完了되는 대로 委員님들께 資料를 配付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專門委員의 檢討報告는 중요한 事項만을 간략하게 報告토록 하였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 政黨法中改正法律案(申相式議員外 171人 發議)
2. 政黨法中改正法律案(趙世衡議員外 96人 發議)
3. 政治資金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申相式議員外 171人 發議)
4. 政治資金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朴相千議員外 96人 發議)
5. 公職者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案(申相式議員外 171人 發議)
6. 公職選舉法案(趙世衡議員外 95人 發議)

(14時17分)

○委員長 申相式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申相式議員外 171人이 發議한 政黨法中改正法律案과 議事日程 第2項 趙世衡議員外 96人이 發議한 政黨法中改正法律案, 議事日程 第3項 申相式議員外 171人이 發議한 政治資金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과 議事日程 第4項

朴相千議員外 96人이 發議한 政治資金에 관한 法律中改正法律案, 議事日程 第5項 申相式議員外 171人이 發議한 公職者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案과 議事日程 第6項 趙世衡議員外 95人이 發議한 公職選舉法案 이상 6個 法案을 一括하여 上程합니다.

朴燾太議員 나오셔서 議事日程 第1項, 3項, 5項에 대한 提案說明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燾太議員 먼저 政黨法中改正法律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드리겠습니다.

政黨이 國民의 政治的 意思形成에 參與하는 團體로서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政黨設立要件을 완화하고 또 政黨加入資格 節次 등을 완화 내지 간소화하여 國民의 政治參與機會를 확대하고 自力力 있는 政黨運營을 制度的으로 保障함으로써 政黨이 國民속에 그 뿌리를 튼튼히 내릴 수 있도록 하며 기타 選舉制度的 변경등으로 나타난 法體系 및 法運用上的 문제점을 補完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 政治資金에 관한 法律中改正法律案에 대한 提案說明을 올리겠습니다.

이제까지 韓國政治의 患部로 지적되던 政治資金의 陰性的 調達, 多多益善이면 그만이라는 慢性的인 道德的 不感症이 그간 政治圈 전체에 팽배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지금까지 우리나라 政黨의 병폐인 中央黨은 黨外의 막후지원 없이는 존재하지 못하고 地區黨은 中央黨의 支援를 생명선으로 하는 기형적 형태에서는 民主政黨의 발전을 기약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政經癒着이라는 부패의 고리를 영원히 단절할 수 없고 또 政黨이 자립능력 없이 자기 존재를 외부에 의탁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政治의 主導者가 아닌 검은 돈 공급자의 하수인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간 사회정의의 실현을 위하여 절실히 요망되던 金融實名制와 公職者의 財產公開가 실시됨에 따라 이러한 시대정신에 맞춰 政治資金에도 검은 돈의 流出入을 엄격히 차단하겠습니다.

일체의 政治資金이 공개되도록 하고 選舉管理委員會에 報告되도록 하여 투명성, 공개

성이 실현되도록 함으로써 앞으로 幕後政治 錢國區 돈錢字 錢國區라는 政界의 汚名이 사라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政治資金은 主權者인 國民으로부터 나오는 깨끗한 돈, 後援會를 통해 각출되는 합법적인 돈만으로 충당돼야 할 것이며 이러한 바탕위에 새 政治文化의 창조는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이 改正案은 이러한 새 政治文化 창조라는 신념아래 黨利黨略을 떠나 초당적 가치에 기초하였으며 政黨의 지출을 최소화하고 최소의 자금조달로 자생할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 公職者選舉및選舉不正防止法案에 대한 提案說明입니다.

選舉法이 철저히 지켜지고 돈으로 票를 사려는 풍조를 일소하여 金權의 選舉 지배를 배제하는 한편 選舉公營制를 확대하여 候補者들이 같은 조건으로 主權者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회균등을 보장하여 不法으로 당선된 人士에게 끝까지 不法을 추궁하여 當選을 무효화시킴으로써 票의 正義가 실현되도록 하고 이제까지 韓國政治의 환부로 지적되던 選舉에서의 과열과 타락, 金權支配, 不法과 違法的 行爲 그리고 당선되면 그만이라는 無法者的인 사고를 과감히 시정하기 위하여 그동안 執權 與黨의 프리미엄으로 분류되던 條項들을 과감히 포기하고 黨利黨略을 떠난 초당적 가치에 입각하여 選舉制度를 개혁함으로써 새로운 選舉文化를 정착시키고 새 政治文化의 창조라는 國民의 여망과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방금 提案說明을 드린 것 말고 主要骨子와 그 내용등은 油印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존경하는 여러 委員님들께서 저희 原案대로 통과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委員長 申相式 朴燾太議員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朴相千議員 나오셔서 議事日程 第2·4·6項에 대한 提案說明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朴相千議員 중복을 피하기 위해서 3個

選舉關係法案의 공통된 提案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各 法案의 특징 그리고 主要骨子は 油印物로 대체하겠습니다.

우리 特委가 앞으로 20日間 審議할 政治關係法은 앞으로 이 나라 政治의 틀을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選舉關係法이라고 하지 않고 政治關係法이라고 한 것은 安企部法이나 도청방지를 위한 通信秘密保護法도 情報政治를 제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들 法案이 합쳐져서 우리나라 政治의 틀을 결정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政治의 틀이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經濟와 社會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고 하는 것은 委員 여러분들께서 이미 잘 아시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나라 전체의 안목에서 法案을 起草했습니다.

黨派的 이해를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것이 國家的 이해관계에 해를 끼칠 때에는 과감하게 버리고 國家 쪽을 선택했습니다. 특히 選舉關係法은 앞으로 우리의 政治 패턴을 결정하는 결정적 法案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이상한 두 가지 반론이 있습니다.

하나는 法과 制度가 무슨 소용이나 국민의식이 잘 되어야 政治가 바로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은 半만 맞는 말입니다.

法과 制度는 국민의식의 가치기준이 되기 때문에 法과 制度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따라서 국민의식이 변화합니다. 또 국민의식에 의해서 法과 制度가 왜곡되고 그 運用이 잘못되는 것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法과 制度와 국민의식은 상호작용을 한다는 것이 오늘날 대다수 社會科學者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그 다음에 또하나 이론은 大統領이 잘하면 되지 法은 다소 잘못 만들어도 되지 않느냐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만든 이 法은 앞으로 5年間の 시한부로 만든 法이 아니고 영구히 지속될 法이고 또 大統領이 일선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세세한 것까지 전부 파악할 수는 도저히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반론 또한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면에서 이 세 法案이 가급적이면 이상적으로 타결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음은 個個法案에 대해서 간단히 몇 마디씩만 하겠습니다.

政黨法中改正法律案은 2가지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하나는 黨內 民主主義를 신장하도록 黨의 主要黨職과 또 公薦候補者를 투표로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政黨의 자율에 맡기면 되는 것이 아니냐 黨憲으로 정하면 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지난 50年間 黨의 자율에 맡겼는데 지금까지 되지 않고 있습니다. 法으로 강제하는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또 하나는 政黨의 創黨要件을 다소 완화하고 이를테면 언론인의 政黨加入을 허용하는 것과 같은 政黨加入 기회를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나쳐서 地域政黨이 출현할 수 있는 소지를 法으로 만들어 줄 수는 없고 또 장난비슷한 政黨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기는 것을 허용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政黨에 대해서 後援會를 결성해서 돈을 걷게 하고 그 돈에 대해서 免稅 혜택을 주는 그런 특혜가 부여되는데 장난처럼 政黨을 만들어서 그런 특혜를 국민의 세금위에서 누리게 할 수는 없다 하는 것이 民主黨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후죽순처럼 많은 政黨이 장난비슷하게 생기면 一與多野의 현상이 생깁니다. 與黨은 하나고 野黨은 무수히 많은 이런 사태가 초래돼서 選舉의 공정한 게임을 해치기 때문에 이 점도 유의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政治資金에 관한法律에 관해서 몇 마디 하겠습니다.

우리는 2가지로 기준으로 이 政治資金法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 政治資金의 특징은 하나는 陰性資金이 政治資金의 주종을 이루어 왔다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政治資金 조달에 있어서 與野間의 불균형이 너무 심하다 하는 것입니다.

陰性資金을 막아야 되겠다는 점에 대해서는 우리 존경하는 朴燾太議員이 아까 잘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與野間의 政治資金의 불균형에 대해서 몇 마디만 하겠습니다.

돈이 한 黨에 너무 많으면 돈을 選舉에 사용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金品選舉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아가서 選舉의 공정성을 해칩니다.

選舉를 자동차경주에 비유하자면 자동차의 휘발유 탱크에 滿탱크의 휘발유를 넣은 자동차와 그 10分의 1이나 20分의 1밖에 넣지 못한 野黨의 자동차를 출발시켜 놓고 공정한 게임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野黨의 자동차는 휘발유가 적어서 도중에 떨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천천히 경제속도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野黨에게도 최소한의 政治費用이 조달될 수 있는 制度를 만들고자 합니다.

野黨에 政治資金이 전혀 들어가지 못하도록 공공 묶는 것이 이 시대의 政治改革의 요체는 아닐 것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 與黨特委 여러분들의 깊은 성찰이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選舉法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이번 選舉法案은 돈 안드는 選舉에 주안점을 두고 만들었습니다.

選舉區 통폐합이나 政治的 의미가 강한 制度 등은 2次 改正으로 미루었습니다.

돈 안드는 選舉는 우리 모두가 희망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만 選舉에 지금과 같이 엄청난 돈이 들어간다고 하면 앞으로 政治圈의 부정과 비리를 막을 수가 없을 것이고 부정과 비리가 지속되면 經濟構造를 왜곡시키고 장기적인 經濟活性化나 經濟正義의 실현이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政治人은 돈을 많이 주는 사람에게 호감을 품고 편을 들게 되기 때문에 政治는 항상 돈많은 사람들 편에 서게 돼서 계층간의 갈등을 해소하지도 못하고 이로 인해서 사회안정을 이룩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 주안을 두고 우리는 13代國會부터 지금까지 말은 트고 돈은 막는 選舉를 주장하여 왔습니다마는 몇 차례의 選舉法 改正에서 항상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조항 돈을 막을 수 있는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조항들은 관철을 못 시켰습니다.

그 결정적 역할을 하는 조항이 무엇인가 저는 2가지만 말하겠습니다.

하나는 選舉法을 위반해서 돈을 많이 쓰는 選舉를 한 사람이 반드시 재판에 회부돼서 처벌을 받도록 강제하는 制度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與野 選舉法이 모두 選舉犯罪로 刑을 받은 사람은 參政權을 장기간 제한하고 選舉費用 제한액을 대폭 축소하고 選舉犯罪에 대한 候補者의 연대책임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또 그밖의 모든 가혹한 制裁란 制裁는 사람의 머리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 갖다 넣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制度는 그것을 위반한 사람이 재판에 붙여져서 刑을 받은 다음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혹한 制裁를 규정해 놓고 그 사람이 재판에 붙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누가 選舉法을 지키겠습니까? 지켜지는 選舉法은 될 수가 없습니다.

비유한다면 병풍속에 그려진 떡과 같습니다. 그래서 選舉法을 위반하여 金品選舉를 한 사람이 반드시 기소되도록 강제하는 그런 制度를 두지 않으면 세상을 시끄럽게 하고 번 이 選舉法이 이 다음에 실천단계에 들어갈 때 하나의 종이호랑이에 불과하게 되고 특히 野黨에 대해서는 무서운 족쇄로 작용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改革選舉法이 改革을 하지 못하고 野黨 탄압의 도구로 둔갑하는 新惡法으로 등장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 法을 위반한 사람은 반드시 기소되도록 하는 정치가 필요하고 그래서 다같이 너도 나도 法을 지키려고 처음부터 마음을 먹는 그런 풍토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黨은 여러 委員들이 잘 아시는 維新때 폐지된 裁定申請制度를 選舉法에 규정을 했습니다.

두번째는 돈을 쓸 기회를 합법적으로 보장하는 制度가 現行 選舉法에 있습니다.

選舉期間중에 黨員 단합대회를 해서 그 실은 非黨員을 모아놓고 金品이나 향응을 베풀습니다. 누가 적발하러 들어가려고 하면 黨員이 아닌데 왜 들어 오느냐 하고 밀어내고 계속합니다.

이것은 無所屬과의 형평에도 어긋나지만 金品選舉 響應選舉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유도하는 이러한 制度이기 때문에 이 制度 또한 시정이 돼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일일이 설명을 생략하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하면서 提案說明에 갈음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選舉制度가 들어온지가 반세기가 되었습니다. 반세기가 되었으면 이제는 돈으로 票를 사는 選舉는 진정으로 끝낼 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50年동안 연습을 하고도 아직도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나라는 열등아가 될 것이고 앞으로 장래가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黨派를 초월해서 지킬 수 있는 選舉法 틀림없이 지켜지는 選舉法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우리 黨은 提案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委員長 申相式 朴相千議員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1項부터 6項에 대한 專門委員의 檢討報告가 있습니다.

○專門委員 韓世東 먼저 政黨法中改正法律案에 대해서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

(參 照)

目 次

- 1. 發議 및 回附日字
- 2. 提案理由
 - 가. 第1案의 提案理由
 - 나. 第2案의 提案理由
- 3. 主要骨子
 - 가. 第1案의 主要骨子
 - 나. 第2案의 主要骨子
- 4. 檢討意見

申相式·朴煥太·梁稔植·南在斗·姜信玉·金榮駟·姜三載·文正秀·康容植·柳興洙·白南治·宋千永·崔在旭·河舜鳳·黃潤錫·姜仁燮·金

榮珍·金炯旻·朴範珍·朴憲基·朴熙富·成武鏞 議員의 150人이 發議한 政黨法中改正法律案과 趙世衡·洪思德·金炳午·朴相千·鄭均桓·李協·鄭璣浩·柳寅泰議員外 88人이 發議한 政黨法中改正法律案에 대하여 檢討한 結果를 一括하여 報告드리겠습니다.

便宜上 民主自由黨案을 第1案, 民主黨案을 第2案으로 略稱하겠습니다. 7페이지 檢討意見을 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1. 發議 및 回附日字

가. 第1案의 發議 및 回附日字

○發議日字: 1993年11月15日

○回附日字: 1993年11月16日

나. 第2案의 發議 및 回附日字

○發議日字: 1993年9月16日

○回附日字: 1993年9月17日

2. 提案理由

가. 第1案의 提案理由

政黨이 國民의 政治의 意思形成에 參與하는 團體로서의 機能을 효율적으로 遂行할 수 있도록 政黨設立要件 및 政黨加入資格·節次 등을 緩和 내지 簡素化하여 國民의 政治參與機會를 擴大시키고, 자생력있는 政黨運營을 制度的으로 保障함으로써 政黨이 國民속에 그 뿌리를 튼튼히 내릴 수 있도록 하며, 기타 選舉制度의 變更등으로 나타난 立法 및 法運用上の 問題點을 補完함으로써 합리적인 法體系를 維持하려는 것임.

나. 第2案의 提案理由

現代 民主政治에서 核心的 役割을 하는 政黨에 대하여 黨內 民主主義를 伸張하고 政黨活動에 대한 保護를 強化하는 한편 政黨創黨要件의 緩和, 政黨加入機會의 擴大를 통하여 政黨의 設立을 容易하게 하는 등 政治改革의 一環으로 政黨制度에 대한 民主的 改革을 하기 위함.

3. 主要骨子

가. 第1案의 主要骨子

(1) 政黨合黨의 效力을 猶豫하는 選舉의 範圍를 政黨이 候補者를 推薦할 수 있는 公職選舉로 擴大하여 選舉管理상의 問題點을 解消함(案 第4條의 2).

(2) 發起人 및 黨員資格을 一元化하고 大

統領令으로 정하는 公務員과 敎員의에는 누구든지 國會議員選舉權이 있으면 發起人 및 黨員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言論人의 政黨加入을 전면 許容함(案 第6條).

(3) 地區黨創黨準備委員會 申告制度를 廢止하여 創黨節次를 簡素化함(案 第10條).

(4) 法定黨員의 入黨願書에 印鑑證明書와 住民登錄票抄本을 添附하도록 하는 規定을 削除함으로써 入黨節次를 簡素化함(案 第20條, 案 第21條).

(5) 政黨은 黨의 民主·自活을 도모하기 위하여 黨費納付制度를 설정·運營하도록 하고, 黨費納付義務를 履行하지 아니한 黨員의 除名·權利行使의 制限 기타 필요한 事項은 黨憲으로 정하도록 하여 黨費納付制度의 정착을 誘導함(案 第22條의 2).

(6) 脫黨申告書를 所屬 地區黨 뿐만 아니라 그 上級黨部에도 提出할 수 있도록 하고, 脫黨의 效力은 脫黨申告書가 所屬 地區黨 또는 그 上級黨部에 接受된 때 發生하도록 하여 黨員의 脫黨權을 保障함(案 第23條第1項).

(7) 政黨은 代表者등의 變更이나 合黨에 따른 組織改編시 法定簿册과 政黨運營에 관련된 印章등의 引繼義務者를 黨憲에 정하도록 하고, 法定簿册 등을 지체없이 引繼하지 아니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過怠料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政黨의 黨務가 계속 유지되도록 함(案 第24條의 2, 案 第54條의 2).

(8) 政黨設立에 필요한 法定地區黨數를 현재의 國會議員地域選舉區 總數의 5분의 1이상(48개)에서 市·道 總數(15개) 이상으로 緩和하고, 市·道 分散要件도 5개 이상에서 3개 이상으로 緩和하는 한편, 하나의 市·道에 두는 地區黨數制限을 削除함으로써 政黨의 設立을 容易하게 함(案 第25條, 案 第26條).

(9) 모든 代議機關의 決議는 書面이나 代理人에 의하여 할 수도 없도록 함(案 第29條의 2).

(10) 法定地區黨數와 法定黨員數 등 요건 省略로 인한 政黨의 登錄取消를 猶豫할

수 있는 選舉의 範圍를 政黨이 候補者를 推薦할 수 있는 公職選舉로 擴大함으로써 政黨의 존립을 두텁게 保障함(案 第38條第1項).

(11) 政黨이 國民의 政治的 意思形成에 參與하는 團體로서의 가치를 부여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大統領選舉·임기만으로 인한 각종 公職選舉에 候補者를 推薦하지 않으면 당해 政黨의 登錄을 取消하도록 함(案 第38條第1項).

(12) 中央黨 또는 그 創黨準備委員會는 地區黨創黨承認 取消事由와 節次를 黨憲 또는 創黨準備委員會規約에 정하도록 하고, 黨憲 또는 規約에 規定된 事由의 事由로 取消할 때에는 그 代議機關에서 投票로 決定하도록 함(案 第39條의 2).

(13) 政黨의 解散·登錄取消시 殘餘財產處分에 관한 規定을 政治資金에 관한 法律로 移管하여 政黨의 解散에 관한 法令體系를 一元化함(案 第41條).

(14) 創黨準備委員會 및 政黨의 名稱(略稱을 포함한다)은 이미 申告된 創黨準備委員會 및 登錄된 政黨의 名稱과 뚜렷이 구별되도록 함(案 第43條第3項).

나. 第2案의 主要骨子

(1) 별도로 規定되고 있는 發起人 및 黨員의 資格을 1개 條文으로 單一化하고(현행 法 第6條와 第17條를 案 第6條로 흡수), 大統領令에 위임되어 있는 政黨의 發起人 및 黨員의 資格을 法律에 직접 規定하는 한편 言論人의 政黨加入 制限을 철폐함으로써 言論人의 政黨活動을 保障하고, 政府投資機關의 任·職員등의 政黨加入을 금지함(案 第6條).

(2) 大統領令에 規定되어 있는 黨支部 및 黨連絡事務所의 登錄申請事項을 法律에 明示함(案 第13條의 2).

(3) 黨員이 되고자 하는 자의 入黨申請과 이에 대한 黨員資格審査機構의 심의·入黨의 效力, 入黨이 허가되지 아니한 경우들의 救濟節次를 구체적으로 명시함(案 第20條).

(4) 法定黨員數에 該當하는 수의 黨員의 入黨願書에 印鑑證明書 및 住民登錄票抄本을 添加하도록 하는 規定을 削除함

(案 第20條 및 案 第21條).

- (5) 黨費納付制度를 導入함(案 第22條의 2).
- (6) 黨員이 脫黨하고자 할 경우에 脫黨申告書를 현재와 같이 所屬地區黨에 提出하는 이외에 所屬地區黨의 機能麻痺 등으로 提出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上級黨部에 提出할 수 있도록 制度的 裝置를 講究함(案 第23條第1項).
- (7) 政黨은 代表者등의 變更이나 合黨에 따른 組織改編時 法定簿冊과 政黨運營에 關聯되는 印章등의 引繼義務者를 黨憲에 定하도록 義務化하고, 引繼義務者의 引繼義務不履行에 대한 罰則條項을 設치함(案 第24條의 2, 案 第54條第2項).
- (8) 政黨의 成立要件인 法定地區黨數를 현행 國會議員選舉法의 地域選舉區總數의 5분의 1 이상에서 10분의 1 이상으로 要件을 緩和함(案 第25條).
- (9) 黨憲으로 規定하도록 한 中央黨 代議機關과 受任代議機構의 構成 原則, 中央黨 代議機關의 權限, 中央黨代表者와 主要執行機關의 選出方法 등을 規定함(案 第29條).
- (10) 黨憲으로 規定하도록 한 公職候補者 推薦 節次에 있어 公職候補者는 該當黨部의 代議機關 또는 黨員總會의 秘密投票에 의해 選定하는 原則을 법으로 明示하는 한편 具體的인 節次는 黨憲으로 定하도록 함(案 第31條).
- (11) 地區黨 創黨 承認에 대한 取消事由와 節次를 黨憲 또는 創黨準備委員會 規約에 定하도록 함(案 第39條의 2).
- (12) 創黨準備委員會 및 政黨의 名稱은 이미 申告된 創黨準備委員會 또는 登錄된 政黨이 使用중인 名稱과 구별되도록 함(案 第43條第3項).
- (13) 創黨妨害등의 罪와 公職選舉候補者 推薦에 관한 金品提供등의 罪를 新設함(案 第54條, 案 第55條).

4. 檢討意見

政黨法은 政黨이 國民의 政治的 意思形成에 參與하는데 필요한 組織을 確保하고 政黨의 民主的인 組織과 活動을 保障함으로써

民主政治의 건전한 발전에 寄與하고자 1969年1月23日 制定 公布된 이래 지금까지 6차에 걸쳐 改正된 바 있습니다.

이번에 當特別委員會에 回附된 두건의 改正法律案은 政黨設立要件을 緩和하고 政黨加入機會를 擴大하는등 政黨制度的 개혁을 통하여 政黨이 國民의 政治的 意思를 形成하는 團體로서의 機能을 효율적으로 遂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未備點을 補完, 整備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두 法律案의 內容이 같거나 類似한 條項을 살펴보면 油印物에 있는 내용중 일부를 생략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생략하고,

(參 照)

첫째, 政黨 合黨의 效力과 登錄取消의 효과를 猶豫하는 選舉의 範圍를 “國會議員選舉”에서 “政黨이 候補者를 推薦할 수 있는 公職選舉”로 함으로써 그 範圍를 擴大하였습니다(第1·2案：第4條의 2, 第1·2案：第38條).

둘째, 地區黨 創黨을 容易하게 하기 위하여 地區黨創黨準備委員會 結成時 申告制度를 廢止하였으며(第1·2案：第10條),

(參 照)

셋째, 地區黨 活動을 保障하기 위하여 地區黨創黨承認 取消事由와 節次를 黨憲 또는 創黨準備委員會規約에 定하도록 하고, 이외의 事由로 取消할 때에는 代議機關에서 投票로 決定하도록 하였습니다(第1·2案：第39條의 2).

넷째, 政黨의 名稱은 물론 略稱까지도 登錄하도록 하고, 創黨準備委員會 및 政黨의 名稱은 이미 申告된 名稱과 뚜렷이 구별이 되도록 하였습니다(第1·2案：第12條, 第43條第3項).

다섯째, 政黨 加入과 脫黨의 自由를 保障하기 위하여

法定黨員數에 해당하는 入黨願書에는 印鑑證明書와 住民登錄票를 添附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廢止함으로써 節次를 簡素化하고(第1·2案：第20條, 第21條),

脫黨申告書를 地區黨은 물론 上級黨部에 提出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黨員의 自意에 의한 脫黨이 容易하도록 하였습니다(第1·2案 : 第23條).

여섯째, 政黨 運營의 改善을 위하여 政黨의 代表者등의 變更이나 合黨에 따른 組織 改編時 法定簿冊과 政黨運營에 關連되는 印章등의 引繼義務者를 黨憲에 定하도록 하고 (第1·2案 : 第24條의 2),

代表機關의 決議는 書面이나 代理人에 의해서는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政黨의 主要事項 決定에 따른 實效性과 安定性을 確保하였습니다(第1·2案 : 第29條의 2).

이외에 黨費納付制度를 導入하고 黨費納付義務등 필요한 事項은 黨憲으로 定하도록 함으로써 黨員의 精銳化는 물론 黨員의 積極적인 參與를 誘導하고 있습니다(第1·2案 : 第22條의 2).

다음은 일부 相異한 內容에 關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發起人과 黨員이 될 수 있는 者의 範圍에 關해서

現行法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公務員, 敎員 및 言論人을 除外하고 있으나 第1案은 大統領令으로 定하는 公務員과 敎員만을 除外함으로써 言論人의 政黨加入을 許容하고 있으며(案 第6條),

第2案은 發起人과 黨員이 될 수 없는 者의 範圍를 具體的으로 法에 明示하고 있습니다. 그 內容을 살펴보면 國家公務員法 및 地方公務員法에 規定된 公務員은 發起人 및 黨員이 될 수 없으나 大統領, 國務總理, 國務委員등 政治에 影響을 미칠 수 있는 分野에 從事하는 公職者에 대해서는 政黨加入을 許容하는 한편 政府 및 地方自治團體의 投資機關 任·職員, 洞·里·班의 長 등 사실상 公務員에 준하는 身分을 所有함으로써 政治的 中立性이 요구되는 公職者에 대해서는 政黨加入을 금지하고 있으며, 言論人에 대하여는 除外規定을 削除함으로써 第1案과 마찬가지로 政黨加入을 許容하고 있습니다(案 第6條).

둘째, 政黨設立을 容易하게 하기 위하여 現行 地域選舉區總數의 5분의 1이상(48개)의 法定地區黨數를 第1案은 “서울特別市·直

轄市·道의 總數이상에 該當하는 數(15개)”로 하고(案 第25條),

第2案은 “地域選舉區總數의 10분의 1이상(24개)”으로 緩和하고 있습니다(案 第25條).

그 외에도 第1案은

地區黨의 分散要件을 서울特別市·直轄市·道중 5이상에서 3이상으로 緩和하고 있으며(案 第26條),

政黨의 登錄取消 事由에 政黨이 候補者를 推薦할 수 있는 公職選舉에 候補者를 推薦하지 아니한 때를 추가하여 名目上의 政黨은 존속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案 第38條第1項第2號).

第2案은

國會議員 이외의 黨員 除名(案 第19條第2項), 黨員의 入黨節次(案 第20條), 政黨機構의 法制化(案 第29條), 公職候補者의 推薦에 所屬黨員의 意思反映(案 第31條)등에 대하여 規定하고 있습니다.

한편 中央選舉管理委員會에서는 지난 5月 17日에 政黨法中改正法律案에 대한 意見을 國會에 提出하였으며 配付해드린 油印物의 對比表에 參考하시도록 記載하였습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3項, 4項에 대해서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

申相式議員外 171人이 發議한 政治資金에 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과 朴相千議員外 96人이 發議한 政治資金에 關한法律中改正法律案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일괄하여 報告드리겠습니다.

편의상 民主自由黨案을 第1案, 民主黨案을 第2案으로 하겠습니다.

유인물 9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目 次

1. 發議 및 回附日字
2. 提案事由
 - 가. 第1案의 提案理由
 - 나. 第2案의 提案理由
3. 主要骨子
 - 가. 第1案의 主要骨子
 - 나. 第2案의 主要骨子
4. 檢討意見

.....
 申相式·朴燾太·梁昶植·南在斗·姜信玉·金榮駟·姜三載·文正秀·康容植·柳興洙·白南治·宋千永·崔在旭·河舜鳳·黃潤鎰·姜仁燮·金榮珍·金炯旣·朴範珍·朴憲基·朴熙富·成武鏞議員의 150人이 發議한 政治資金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과 朴相千·金炳午·張基旭·金忠兆·姜喆善·姜秀淋·林采正·楊文熙議員外 88人이 發議한 政治資金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에 대하여 檢討한 結果를 一括하여 報告드리겠습니다.

便宜上 民主自由黨案을 第1案, 民主黨案을 第2案으로 略稱하겠습니다.

.....
 (參 照)

1. 發議 및 回附日字

가. 第1案의 發議 및 回附日字

○發議日字: 1993年11月15日

○回附日字: 1993年11月16日

나. 第2案의 發議 및 回附日字

○發議日字: 1993年9月16日

○回附日字: 1993年9月17日

2. 提案理由

가. 第1案의 提案理由

우리나라의 政黨은 먼저 中央黨은 당외의 막후 支援으로 運營되고 있으며, 地區黨은 中央黨의 支援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 이와같이 음성적으로 調達된 政治資金으로 政黨이 運營됨에 따라 政黨의 자립능력이 喪失되고, 政黨은 政治의 主導者가 아닌 검은 돈 供給者의 下手人으로 전락될 수 밖에 없었음.

社會正義의 實現을 위하여 요망되던 金融實名制와 公職者의 財產公開가 實施됨에 따라 政治資金에 있어서도 검은 돈의 유출입이 차단되었음.

이에 따라 政治資金의 公開와 政治資金의 造成은 國民으로부터 나오는 깨끗한 돈과 後援會를 통한 합법적인 돈만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이외에 政黨의 支出을 최소화하고, 최소의 資金調達로 자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나. 第2案의 提案理由

지난 30餘年間 우리나라 政治資金制度의 特徵은 陰性資金이 政治資金의 大宗을 이룬

점과 政治資金調達에 있어 與·野間의 심각한 不均衡으로 要約할 수 있음.

金融實名制의 실시와 公職者財產公開制度의 導入에 따라 '깨끗한 政治'에 대한 國民의 所望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지난날의 腐敗慣行을 終熄시키고 政治에 필요한 最少費用이 陽性的, 合法的으로 造成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與·野間의 政治資金 調達上의 不均衡을 是正하는등 政治資金制度의 改善을 圖謀하기위한 것임.

3. 主要骨子

가. 第1案의 主要骨子

(1) 政治資金은 私的 資金과의 구분을 명확히 하여 國民의 政治的 意思形成에 參與하는 데 필요한 經費로만 支出되도록 하며, 政治資金을 接受함에 있어 寄附者의 기대심리를 拂拭함과 아울러 提供된 政治資金은 추후도 國民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運用되어야 함을 強調함(案 第2條).

(2) 黨費納付의 上限線을 年間 5억원 또는 前年度所得의 100분의 5 중 多額으로 정함(案 第4條 第1項).

(3) 國會 交涉團體의 構成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政黨의 地區黨에 後援會 構成을 許容함(案 第3條 第8號).

(4) 後援會의 會員數를 中央黨後援會는 1천인에서 2천인으로, 市·道支部 後援會는 300인에서 500인으로, 地區黨등의 後援會는 200인에서 300인으로 上向調整함(案 第5條 第4項).

(5) 後援人이 後援會에 納入 또는 寄附할 수 있는 金品은 現행 1만원 또는 그에 相當하는 價額 이상을 유지하되, 廣告募金의 경우에는 3천원 또는 그에 相當하는 價額 이상으로 下向調整함(案 第6條의 2 第1項).

(6) 後援會 會員등의 納入 또는 寄附시 100만원 이상은 金融機關을 통한 送金을 除外하고는 現金으로 納入 또는 寄附할 수 없도록 함(案 第6條의 2 第5項).

(7) 後援會의 會員은 年間 1만원 또는 그에 相當하는 價額 이상의 後援金을 納入하도록 義務規定을 신설함(案 第6條

의 2 第6項).

(8) 後援會의 金品 募集을 연 2회 할 수 있도록 하되, 選舉期間중에는 1회로 制限하고 政黨後援會와 候補者後援會에 한하여 許容하며, 屋內場所에서의 集會에 의한 방법으로 金品을 募集하는 때에는 참가자에게 주류를 除外한 廉價의 다과 등을 除外하고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金品을 提供할 수 없도록 함(案 第6條의 4 第1項 및 第2項).

(9) 政治資金의 收入시 中央選舉管理委員會가 발행한 領收證의 使用을 의무화함(案 第6條의 6).

(10) 中央黨創黨準備委員會後援會의 中央黨後援會로의 存續根據를 規定하고, 소멸된 後援會의 職權抹消根據를 規定함(案 第10條 第1項 및 第3項).

(11) 補助金의 用途에 組織活動費를 追加하며, 中央選舉管理委員會는 補助金을 지급받는 政黨에 대하여 監督상 필요하다고 認定하는 때에는 補助金의 支出·經理 狀況을 調査·確認할 수 있도록 함(案 第19條 第1項 및 第3項).

(12) 政黨과 後援會등의 會計報告시 支出 證憑書類와 함께 自體監查機關責任者의 監查意見書(中央黨의 경우에는 公認會計士의 監查意見書 追加)를 添附하도록 하고, 報告전에 내부 議決機關의 사전 審査를 거치도록 議決參與者의 連帶責任制를 도입하여 資金管理責任者의 恣意的 運營을 牽制하도록 함(案 第24條 第3項 및 第4項).

(13) 會計報告內容의 一般公開 및 異議申請을 許容하고, 이에 대한 管轄選舉管理委員會의 實查權을 認定함(案 第24條의 2).

나. 第2案의 主要骨子

(1) 後援會를 둘 수 있는 政黨의 地區黨을 “國會에서 交涉團體를 構成한 政黨의 地區黨”에서 모든 政黨의 地區黨으로 擴大함(案 第3條 第8號).

(2) 黨費의 種類와 徵收節次를 黨憲으로 定하도록 함(案 第4條 第2項).

(3) 後援會 會員을 個人, 法人 以外에 團體를 追加하고 後援會의 會員數를 中央

黨後援會는 1,000人에서 2,000人으로, 市·道支部後援會는 300人에서 500人으로, 地區黨등의 後援會는 200人에서 300人으로 擴大함(案 第5條 第3項, 第4項).

(4) 政黨의 市·道支部後援會, 地區黨後援會, 地域選舉區에서 當選된 國會議員 또는 地域選舉區의 國會議員候補者의 後援會는 管轄地域外에서 會員을 募集하거나 金品募集을 할 수 있으며, 地域選舉區에서 當選된 國會議員 또는 地域選舉區의 國會議員候補者의 後援會는 事務所와 連絡所를 서울特別市와 그 地域選舉區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案 第6條 第3項).

(5) 後援會가 平年の 2倍를 募金하고 平年の 2倍를 寄附할 수 있는 “公職選舉가 있는 年度”를 大統領選舉, 國會議員選舉가 있는 年度 以外에 政黨의 候補推薦이 許容되는 地方自治團體의 長과 地方議會議員選舉가 있는 年度를 追加함(案 第6條의 3 第2項 및 第7條 第1項).

(6) 後援會의 金品募集 方法에 集會에 의한 募金, 廣告에 의한 募金 以外에 “政治資金寄附證書에 의한 募金”을 追加하고, 募金回數를 平년에는 1회에서 2회로, 公職選舉가 있는 年度에는 2회에서 4회로 增回함(案 第6條의 4 第1項, 第2項).

(7) 後援會의 集會募金에서 募金演說, 印刷物配布, 酒類를 除外한 飲料水등의 提供을 할 수 있도록 하고, 公職選舉運動期間중에는 1회에 한하여 集會募金を 許容하며, 中央選舉管理委員會規則이 定하는 方法으로 後援會名, 金品募集의 目的과 方法등을 알릴 수 있도록 함(案 第6條의 5 第2項, 第3項).

(8) 後援會는 廣告募金を 위한 廣告를 定期刊行物을 利用하여 1회 募金에 4회의 範圍안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廣告에서 集會募金과 政治資金寄附證書에 의한 募金を 並行한다는 弘報를 할 수 있도록 함(案 第6條의 6 第3項 後段).

(9) 政治資金寄附證書에 의한 募金의 方法과 規制事項을 具體的으로 明示함(案 第6條의 7).

(10) 政治資金의 寄託에 있어서 指定寄託制를 廢止하고, 寄託金은 國庫補助金 配分比率에 따라 配分·支給하도록 變更하며, 指定寄託한 政治資金은 國庫歸屬되도록 함(案 第11條 第3項, 案 第15條 第1項, 案 第16條 第1項).

(11) 言論機關, 言論團體 및 勞動團體도 政治資金을 寄附할 수 있도록 하고, 勞動組合은 政治資金을 寄附하기 위하여 組合費 이외에 政治資金寄附를 위한 別途 基金을 設置·經理할 수 있도록 함(案 第12條, 案 第14條의 2).

(12) 國庫補助金의 計上에 있어서 有權者 1人當 600원에서 800원으로 增額하고, 公職選舉가 있는 年度에는 그 選舉마다 追加 計上하는 金額을 600원에서 800원으로 增額하며, 政黨의 候補推薦이 許容되는 地方自治團體의 長, 地方議會議員의 選舉를 同時 실시하는 때에는 그 選舉마다 600원을 追加計上토록하고, 公職選舉의 範圍에 規定된 市·道議會議員選舉와 市·道知事選舉를 “政黨의 候補推薦이 許容되는 地方自治團體의 長 및 地方議會議員選舉”로 變更함(案 第17條 第1項).

(13) 國庫補助金의 配分 對象에 있어서 國會議員選舉에 參與하지 아니한 政黨의 경우에는 市·道議會議員 또는 市·道知事選舉에서 有效投票總數의 100분의 0.5 이상 得票 要件을 政黨의 候補推薦이 許容되는 地方自治團體의 長 또는 地方議會議員選舉에서 100분의 2 이상의 得票要件으로 強化함(案 第18條 第2項 第3號).

(14) 政黨의 財産狀況과 政治資金의 收入·支出에 관한 內譯 및 決算內譯을 管轄 選舉管理委員會에 報告하는 이외에 該當 政黨의 代議機關에 報告하도록 하고, 選舉期間중의 政治資金의 收入·支出에 관한 內譯 및 決算內譯을 當해 選舉日후 15일까지 管轄 選舉管理委員會에 報告하도록 하며, 會計報告에는 公認會計士의 監查意見 이외에 自體監查機關責任者의 監查意見書도 아울러 添附하도록 함(案 第24條).

(15) 管轄選舉管理委員會는 政黨의 會計報

告 內譯에 대한 審査와 公告를 하고, 이를 一般에게 閱覽할 수 있도록 함(案 第24條의 2).

4. 檢討意見

政治資金에 관한法律은 政治資金의 積着한 調達과 그 公開를 통하여 民主政治의 健全한 發展에 寄與함을 목적으로 1965年2月9日 制定 公布된 이래 지금까지 6차에 걸친 改正이 있어 왔습니다.

금번에 發議 回附된 두건의 改正法律案은 그동안 음성적으로 調達되어 오던 政治資金을 陽性化함으로써 政治資金調達到 따른 國民의 疑惑을 拂拭시키고, 公開的으로 調達된 깨끗한 資金으로 政黨을 運營함으로써 國民의 政治意見形成 團體로서 政黨의 基盤을 더욱 튼튼히 하고 政治資金의 執行에 있어서도 透明性을 保障함으로써 國民으로부터 信賴를 構築할 수 있는 새로운 政治文化를 創造하는 한편 未備點을 整備, 補完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이 두 法律案의 共通된 主要內容을 살펴보면

첫째, 後援會를 둘 수 있는 政黨의 地區黨을 “國會에 交涉團體를 構成하고 있는 政黨의 地區黨”에서 “모든 政黨의 地區黨”으로 擴大하고(第1·2案: 第3條),

둘째, 後援會의 會員數를 中央黨은 “1,000人”에서 “2,000人”으로, 市·道知事는 “300人”에서 “500人”으로, 地區黨은 “200人”에서 “300人”으로 각각 늘렸으며(第1·2案: 第5條 第4號),

셋째, 政黨의 組織活動을 위해서도 國庫補助金을 使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第1·2案: 第19條)政黨活動의 활성화를 圖謀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後援會 代議機關의 決議에 의하여 後援會를 存續할 수 있는 경우를 中央黨創黨準備委員會가 政黨으로 登錄된 경우도 追加하고, 缺格事由가 있는 後援會가 14일 이내에 解散申告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管轄選舉管理委員會가 職權으로 後援會의 登錄을 抹消할 수 있도록 하여(第1·2案: 第10條 第1項 但書 條項, 第10條 第4項)

後援會의 承繼, 合併 및 事後管理등에 관

한 規定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第1案과 第2案의 類似한 內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政治資金 募集에 있어서

- 第1案은

○ 黨費 納付 限度額을 年間 5억원 또는 前年度 所得의 100분의 5 중 多額을 超過할 수 없도록 하고(案 第4條),

○ 後援會 會員에 대해서는 年間 1만원 이상 後援金 納入을 義務化하였으며, 100만원 이상의 金額은 現金으로 納入 또는 寄附할 수 없도록 하여(案 第6條의 2 第5項, 第6項)

政治資金에 의한 政治的 影響力을 排除하고, 政治資金 形成에 있어서 高額을 納入 또는 寄附한 자의 資金出處를 명확히 하는 한편 後援會 會員의 後援金 納入을 強調하고 있습니다.

○ 金品募集 回數에 있어서도 平年 1회를 2회로 늘리는 한편 公職選舉가 있는 年度에는 現행과 같이 2회 募集할 수 있도록 하되 選舉期間중에는 1회에 한 하여 金品을 募集할 수 있도록 하였고(案 第6條의 4 第1項),

○ 領收證 發行 制度를 採擇함으로써(案 第6條의 6)

政治資金募集機會를 늘리되 透明性을 保障하고, 金品募集行事를 選舉運動에 利用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第2案은

○ 後援會의 金品募集方法에 “集會, 廣告” 이외에 “政治資金寄附證書”에 의한 方法을 追加하고(案 第6條의 4 第1項),

○ 金品募集 回數를 平년에는 “2회”, 公職 選舉가 있는 年度에는 “4회”로 늘렸으며(案 第6條의 4 第2項),

○ 言論團體와 勞動組合도 政治資金을 寄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勞動組合에 대하여는 政治資金寄附를 위한 別도 基金을 設置, 經理할 수 있도록 하여(案 第12條, 案 第14條의 2)

政治資金의 募集方法과 回數 및 寄附할 수 있는 對象의 範圍를 第1案보다 넓히고 있습니다.

둘째, 後援會制度의 改善 方法에 있어서

- 第1案은

○ 後援會를 든 國會議員 또는 國會議員候補者가 地區黨의 代表者가 된 경우에는 당해 地區黨의 後援會는 代議機關이나 受任機關의 存續 또는 合併決議로서 그 國會議員 또는 國會議員候補者의 後援會로 存續할 수 있도록 하였고(案 第10條 第1項),

- 第2案은

○ 後援會의 構成員에 “個人, 法人” 이외에 “團體”를 追加하고(案 第5條 第4項),

○ 後援會는 管轄地域외에서도 金品募集을 할 수 있도록 하고, 事務所와 連絡所를 地域選舉區 이외에 “서울特別市”에도 設置할 수 있도록 하여(案 第6條 第3項) 金品募集 對象 및 地域的 範圍를 擴大하고 있습니다.

셋째, 國庫補助金 制度에 있어서는

- 第1案은

○ 國庫補助金의 執行에 대한 調查·確認權限을 中央選舉管理委員會에 附與하여(案 第19條 第3項) 執行 內容에 대한 透明性을 客觀적으로 保障하고 있으며

- 第2案은

○ 國庫補助金 計上 基準을 “600원”에서 “800원”으로 증액하고(案 第17條),

○ 國會議員選舉에 參與하지 아니한 政黨에 대한 國庫補助金의 配分 要件을 보다 강화함으로써(案 第18條 第2項 第3號) 政黨에 대한 國庫補助金의 支援을 늘리는 한편 國民의 支持率이 낮은 政黨은 國庫補助惠澤을 받을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政治資金의 會計制度에 있어서

第1案과 第2案은

財産 및 政治資金의 會計에 관하여 管轄 選舉管理委員會에 報告할 경우 證憑書類와 監查意見書 등을 添附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會計書類의 閱覽期間을 第1案은 3個月, 第2案은 3年으로 定함으로써 政治資金의 執行에 있어서 公明性을 保障하고 있습니다.

그외에 第1案에서는

○ 後援會의 年間寄附限度額을 地區黨의 경우 現행 “1억원”에서 “1억5천만원”으로 上向調整하고, 2배의 金額을 寄附할 수

있는 年度를 政黨이 候補를 推薦할 수 있는 公職選舉가 있는 年度로 그 範圍를 擴大하였습니다(案 第6條의 3 第1項).

- 第2案에서는

○政治資金을 寄託할 경우 특정한 政黨에 限定하거나 政黨間의 配分比率을 指定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指定寄託制度를 廢止하고 있습니다(案 第11條 第3項, 案 第16條 第1項).

한편 中央選舉管理委員會에서는 지난 5月 17日字로 政治資金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에 대한 意見을 提出하였으며, 配付해드린 油印物의 對比表에 記載하였으므로 參考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議事日程 第5項, 第6項에 대해서 檢討報告를 드리겠습니다.

申相式議員外 171人이 發議한 公職者選舉 및 選舉不正防止法案과 趙世衡議員外 95人이 發議한 公職者選舉 및 選舉不正防止法案에 대하여 檢討한 結果를 일괄하여 報告드리겠습니다.

편의상 民主自由黨案을 第1案, 民主黨案을 第2案으로 약칭하겠습니다. 유인물 37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參 照)

목 차

- 1. 발의 및 회부일자
- 2. 제안이유
 - 가. 제1안의 제안이유
 - 나. 제2안의 제안이유
- 3. 주요골자
 - 가. 제1안의 주요골자
 - 나. 제2안의 주요골자

4. 검토의견

申相式·朴燾太·梁昶植·南在斗·姜信玉·金榮駟·姜三載·文正秀·康容植·柳興洙·白南治·宋千永·崔在旭·河舜鳳·黃潤鎭·姜仁燮·金榮珍·金炯旻·朴範珍·朴憲基·朴熙富·成武鏞議員의 150人이 發議한 公職者選舉 및 選舉不正防止法案과 趙世衡·朴相千·金炳午·洪思德·朴實·鄭均桓·姜秀淋議員外 89人이 發議한 公職選舉法案에 대하여 檢討한 結果를

一括하여 報告드리겠습니다.

便宜上 民主自由黨案을 第1案, 民主黨案을 第2案으로 略稱하겠습니다.

(參 照)

1. 發議 및 回附日字

가. 第1案의 發議 및 回附日字

○發議日字: 1993年11月15日

○回附日字: 1993年11月16日

나. 第2案의 發議 및 回附日字

○發議日字: 1993年11月25日

○回附日字: 1993年11月25日

2. 提案理由

가. 第1案의 提案理由

選舉法이 철저히 지켜지고 돈으로 票를 사려는 풍조를 일소하여 金權의 선거지배를 배제하는 한편 選舉公營制를 확대하여 候補者들이 같은 조건으로 主權者에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회균등을 보장하며, 不法으로 당선된 人士에게는 끝까지 不法을 추궁하여 當選을 無效化함으로써 票의 正義가 실현되도록 하고, 이제까지 韓國政治의 患部로 지적되던 選舉에서의 “과열과 타락”, “金權支配”, “不法과 違法の 횡행” 그리고 當選만 되면 그만이라는 “無法者的인 思考”를 과감히 시정하기 위하여 그동안 집권여당의 프리미엄으로 분류되는 條項을 포기하고, 黨利黨略을 떠난 超黨的 價値에 입각하여 選舉制度를 改革함으로써 새로운 選舉文化를 定着시키고 새 政治文化의 創造라는 國民의 희망과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임.

나. 第2案의 提案理由

정치개혁은 선거개혁에서 시작된다. 지금까지와 같이 돈으로 票를 사는 금품선거가 계속될 경우, 선거에 필요한 엄청난 돈 때문에 정치권의 부정과 비리를 막을 길이 없으며, 정치권의 부정과 비리가 지속되면 경제구조를 왜곡시켜 장기적인 경제활성화나 경제정의실현이 어려워지고 정치는 항상 돈 많은 사람들편에 서게 되어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지 못하여 진정한 사회안정도 이룩할 수 없게 된다.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돈으로 票를 사는 선거는 진정한 국민의사의 표출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러한 금

품선거에 의한 민주정치는 참된 민주정치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시각에서 이 나라에 진정한 '선거혁명'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이 법안을 제안한다. 우리는 13대국회 개원당시부터 "말은 트고, 돈은 막는 선거"를 주장하여 왔고 그동안 수차례의 선거법협상에서 끈질긴 노력을 하여 왔으나, 돈을 막을 수 있는 핵심조항들은 관철할 수가 없었다.

금품선거를 막을 수 있는 핵심적 제도는 무엇보다도 금품선거를 자행한 후보자 등이 반드시 처벌을 받도록 강제하는 제도적 장치이다. 선거범죄의 형량강화, 선거범죄로 형을 받은 자의 잠정권 제한의 장기화, 선거비용제한액의 대폭축소, 선거범죄에 대한 후보자의 연대책임 범위확대 등 모든 가혹한 제재는 한결같이 금품선거를 한 자가 소추되어 법원에서 형을 받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들이 소추되도록 강제하는 제도를 두지 아니하면 "그림속의 떡"과 같이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된다. 이는 마치 용의 그림을 그리면서 그 눈을 그리지 아니하는 것에 비유할 수 있겠다.

이 점은 현행 선거법에도 금품선거를 한 자에 대하여 무거운 형을 선고하도록 되어 있지만 힘있는 후보자 등은 검찰이 소추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실제로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게 되기 때문에 너도나도 금품선거를 하게 된 점에서 분명하게 나타난다.

우리는 금품선거를 한 자에 대한 소추를 강제하는 제도로서 유신때 폐지된 '재정신청제도'를 주장하여 왔다. 선거범죄를 고발한 국민은 검찰이 그 사건을 소추하지 아니한 때에는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하고 고등법원은 엄밀한 심사를 하여 그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고 지정변호사(특별검사)로 하여금 검사직무를 행하게 하여 그 사건을 처벌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를 두어야 후보자들이 다함께 돈안쓰는 선거를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선거운동방법중에서 돈을 쓸 기회를 합법적으로 보장하여 주는 제도를 과감히 개선하여야 한다. 선거기간중에 '당원단합대회' 명목으로 '비당원'들을 모아 금품을 제공하면서 이를 적발하려는 사람은 '당원'이 아니라는 구실로 출입을 금지시키는 세

칭 '사랑방좌담회'도 개선하여야 한다.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고 누구나 출입을 허용하는 '공개좌담회'로 바꾸어야 한다.

'선거혁명'은 몇 개의 법조문에 처벌을 무겁게 규정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처벌법규가 실천되도록 강제하는 제도적 장치를 하는 등 치밀한 제도가 선행되고 국민이 감시자가 될 때 비로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은 그실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이다.

이제 이 나라에 근대적 선거제도가 시행된지 반세기가 되었다. 이제는 돈으로 표를 사는 선거는 끝낼 때가 되었다고 본다.

제14대 국회가 이러한 시대적 소명을 받아들여 진정한 '선거혁명'을 이룩하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는 역사의식에서 당과를 초월하여 이 개혁선거법안을 지지하여 줄 것을 요망한다.

3. 主要骨子

가. 第1案의 主要骨子

(1) 選舉의 公正性과 選舉不正防止에 최대 역점을 두고, 大統領·國會議員·地方自治團體의 議會議員 및 長等 選舉職公職者의 選舉에 統一的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함(案 第1條 및 第2條).

(2) 選舉權者의 年齡은 20歲로 함(案 第15條).

(3) 選舉犯으로 罰金 100萬圓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으면 被選舉權을 제한하되, 그 制限期間을 罰金·執行猶豫는 6年, 懲役은 10年으로 확대하고, 選舉事務長·選舉連絡所長·會計責任者 또는 候補者의 直系 尊·卑屬 및 配偶者의 選舉犯罪로 當選無效가 된 者는 10年間 被選舉權을 제한하며, 選舉犯으로 罰金 100萬圓이상의 刑의 宣告를 받으면 10年間 公的 地位를 取得·維持할 수 없도록 함(案 第19條 및 第260條).

(4) 選舉區制는 小選舉區制로 함(案 第21條 내지 第23條).

(5) 國會에 選舉區劃定委員會를 두어 當會議員의 任期滿了에 의한 選舉의 選舉日 전 1年까지 그 의견을 國會議長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國會는 이를 존중하도록 함(案 第24條).

- (6) 國會議員地域區의 劃定은 가능한 한 最大와 最小選舉區의 人口 比例가 4:1 을 넘지 아니하도록 함(案 第25條).
- (7) 選舉期間은 大統領選舉는 21日, 國會議員과 地方自治團體의 議會議員 및 長의 選舉는 15日로 단축함(案 第33條).
- (8) 任期滿了에 의한 選舉의 選舉日을 法定化하고, 補闕選舉등의 選舉日은 별도로 公告하도록 함(案 第34條 내지 第36條).
- (9) 自治區·市·郡의 議會議員과 長의 選舉에서도 政黨이 候補者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함(案 第47條).

- (10) 選舉運動은 公務員등을 제외하고는 누구나 할 수 있도록 하되, 極少數의 事務員의에는 手當과 實費의 지급을 금지함(案 第60條, 第62條 및 第130條).
- (11) 選舉運動規制方法을 포괄적 制限·禁止方式에서 개별적 制限·禁止方式으로 轉換하여 禁止·制限되지 아니한 選舉運動은 모두 許容되도록 하여 選舉運動의 自由를 확대함.
- (12) 法定選舉運動의 方法을 대폭 확대하고 選舉別 特性에 따라 구분함(案 第64條 내지 第77條).

〈選舉別 選舉運動方法〉

運動方法	大統領	國會議員	市·道知事	自治區·市·郡의 長	地方議會議員
宣傳壁報	○	○	○	○	○
選舉公報		○	○	○	○
小型印刷物	○	○	○	○	○
新聞廣告	○		○		
放送演說	○		○		
放送施設主管 演說放送	○	○	○	○	○
經歷放送	○	○	○	○	○
政黨·候補者등에 의한 演說會	○	○	○	○	○
個人演說	○	○	○	○	○
候補者등 초청 對談·討論會	○	○	○	○	○
PC·電話·자필서신	○	○	○	○	○
黨舍·選舉事務所用 懸板·看版	○	○	○	○	○
言論機關의 對談·討論의 放送·報道	○	○	○	○	○
公開場所 訪問	○	○	○	○	○

(13) 選舉運動의 公營制를 확대함.

1) 國家 및 地方自治團體 負擔

(가) 無條件 負擔

- 選舉公報 및 傳單型 小型印刷物의 發送郵便料
- 傳單型 小型印刷物 發送費用(大統領 및 市·道知事の 選舉)
- 選舉公報 發送費用(市·道知事選舉)
- 投票·開票參觀人 手當

○ 鐵道利用 乘車券(大統領選舉)

(나) 一定基準이상 得票時 補填

- 宣傳壁報 作成·貼付·撤去費用
- 選舉公報 作成·發送費用(市·道知事選舉는 作成費用)
- 傳單型 小型印刷物 發送費用(大統領 및 市·道知事の 選舉는 제외)
- 放送演說費用(大統領 및 市·道知事の 選舉)

2) 기타 無料

○經歷放送

(14) 小型印刷物은 選舉管理委員會가 配付하도록 하되, 候補者는 名刺型 小型印刷物 1種만을 作成·配付하도록 함(案 第66條).

(15) 候補者(大統領 및 市·道知事의 選舉에 있어서는 區·市·郡 選舉連絡所마다 候補者가 指名하는 1人을 포함)는 個人演說을 할 수 있도록 하고, 國家·地方自治團體 및 政黨과 관련이 있는 團體등을 제외한 團體가 選舉管理委員會에 申告한 후 候補者 1人을 초청하여 討論할 수 있도록 하는 등 候補者와 選舉權者의 직접 對面機會를 확대함(案 第75條 및 第77條).

(16) 演說會長の 演藝活動을 금지하고, 選舉日전 60日부터 選舉日까지 議政活動報告나 市·道政 및 自治區·市·郡政活動報告를 제한함(案 第72條第8項 및 第106條).

(17) 누구든지 系列化나 下都給등 거래상 特殊關係에 있는 企業組織·企業體와 그 構成員에 대하여 그 地位를 이용한 選舉運動을 금지함(案 第80條).

(18) 公務員, 政府 및 地方自治團體의 投資機關의 常勤任·職員, 統·里·班의 長과 鄉土豫備軍의 小隊長級이상 幹部 또는 特別法에 의하여 설립된 國民運動團體로서 政府의 出捐·補助를 받는 團體의 常勤任·職員과 이들 團體의 中央會長은 특정 政黨 또는 候補者의 업적을 弘報하거나 選舉運動의 企劃에 참여하는 등 選舉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案 第81條).

(19) 團體는 그 名義로 選舉運動을 할 수 없으나 특정 政黨이나 候補者의 政綱·政策·政見중에서 당해 團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을 그 構成員에게 통상적인 方法으로 알리거나 論評하는 것은 금지하지 아니함(案 第82條).

(20) 選舉期間중의 戶別訪問을 제한하되, 道路·市場 또는 待合室 기타 多數人이 왕래하는 公開된 場所의 訪問은 금지하지 아니함(案 第101條).

(21) 候補者登錄申請開始日부터 選舉日 投票마감시각까지 選舉에 관한 輿論調査의 結果公表를 금지함(案 第103條).

(22) 寄附行爲制限期間을 選舉日전 1年부터 選舉日까지로 함(案 第107條).

(23) 누구든지 寄附行爲制限期間중에 選舉에 관하여 政黨 또는 候補者를 위하여 寄附할 수 없도록 寄附行爲制限對象을 대폭 확대함(案 第109條 내지 第110條).

(24) 寄附行爲制限期間중 寄附行爲者는 물론 寄附를 勸誘하거나 수령하는 것도 금지함(案 第111條).

(25) 選舉運動의 自由擴大에 따라 選舉費用의 制限을 費目別 制限方式에서 總額 制限方式으로 轉換하고, 不法選舉運動을 위하여 支出되는 費用 및 第三者가 政黨·候補者·選舉事務長·選舉連絡所長 또는 會計責任者와 通謀하여 당해 政黨이나 候補者의 選舉運動을 위하여 支出하는 費用도 選舉費用에 포함됨을 명시함(案 第114條 내지 第116條).

(26) 選舉費用制限額을 最少化함(案 第116條).

※平均選舉費用制限額

○大統領選舉: 116億원

○地域區國會議員選舉: 4千500萬원

○市·道議會議員選舉: 1千400萬원

○市·道知事選舉: 4億5千萬원

○自治區·市·郡議會議員選舉: 1千萬원

○自治區: 市·郡의 長選舉: 4千300萬원

(27) 選舉費用의 收入과 支出은 반드시 金融機關計座를 통하여 하도록 하며, 收入과 支出報告書를 제출하는 때에는 選舉費用의 모든 收入과 支出內譯(收入·支出年月日과 그 金額, 收入·支出對象者의 姓名·住所·住民登錄番號·電話番號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明細書)과 사실대로 기재하였음을 다짐하는 會計責任者의 宣誓書 및 預金計座 去來內譯書를 첨부하여 보고하도록 하되, 大統領選舉에 있어서는 政黨의 公式議決機構의 議決과 그 議決機構의 代表者와 選舉事務長 및 會計責任者의 연대서명·날인을, 다른 選舉에 있어서는 候補者와 選舉事務長·會計責任者의 연대서명·날인을 하도록 함

(案 第122條 및 第127條).

(28) 收入과 支出報告書와 그 明細書등은 3月間 당해 選舉管理委員會에 비치하여 公開하고, 그 寫本의 交付申請이 있는 때에는 이를 교부하도록 함(案 第128條).

(29) 收入과 支出報告書와 그 明細書에 異議가 있는 사람은 證憑書類를 첨부하여 選舉管理委員會에 異議申請을 할 수 있으며, 異議申請을 받은 選舉管理委員會는 이에 대한 소명자료를 요구하도록 하고, 異議申請과 關係資料의 제출등으로 收入과 支出報告書의 내용중 違法이 발견되면 管轄搜查機關에 告發·搜查依頼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案 第128條 및 第129條).

(30) 收入과 支出報告書에 기재된 외의 第三者가 政黨·候補者·選舉事務長·選舉連絡所長 또는 會計責任者와 通謀하여 支出한 費用 및 通謀한 第三者가 이法에 違反되는 選舉運動을 위하여 支出한 費用도 選舉費用에 合算하여 處罰하도록 함(案 第114條 및 第252條).

(31) 選舉가 임박한 時期에 있어서는 政黨의 政策廣告등을 일정 回數이내에서 제한함(案 第132條).

(32) 選舉期間중의 政綱·政策弘報物의 종류를 제한하고, 반드시 黨員에게만 配付하도록 하며, 政黨代表者가 黨員에게 보내는 激勵書翰도 1회로 제한함(案 第133條).

(33) 選舉期間중의 政黨機關紙의 發行回數·配付方法을 제한함(案 第134條).

(34) 選舉日전 120日부터 選舉日까지의 사이에 개최하는 黨員團合大會·黨員研修會 등은 그 主催黨部와 開催區域을 제한하되, 選舉期間중에는 黨員集會의 開催回數도 邑·面·洞數이내로 제한하고, 管轄區·市·郡選舉管理委員會에 申告하도록 함(案 第136條).

(35) 投票는 候補者名單이 附着된 投票器에 投票카드를 넣고 記票하는 방법으로 함(案 第142條 및 第150條第5項).

(36) 投票通知票를 교부함에 있어 移民·就業등으로 國外에 長期滯留하는 者에게

는 投票通知票를 교부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郵便으로도 발송할 수 있도록 함(案 第146條第5項·第8項)

(37) 不在者投票方法을 現行 大統領選舉法의 不在者投票方法으로 통일함(案 第140條, 第141條 및 第151條).

(38) 開票는 投票카드判讀機와 投票用 電算組織에 의함(案 第167條).

(39) 計票用 프로그램의 작성·修正과 檢證節次를 정함(案 第168條).

(40) 全國區國會議員議席은 政黨의 得票比率에 따라 配分하되, 全國區國會議員選舉의 議席配分을 받을 수 있는 政黨은 地域區國會議員總選舉에서 5席이상의 議席을 차지하거나, 有效投票總數의 100分의 5이상을 得票한 政黨으로 함(案 第184條).

(41) 全國區國會議員當選人이 所屬政黨의 合黨·解散 또는 除名외의 事由로 黨籍을 離脫·變更하거나 2이상의 政黨의 黨員임이 발견된 때에는 그 당선을 無效로 하고, 任期開始후 이러한 事由가 있는 때에는 國會議員職을 喪失하도록 함(案 第187條).

(42) 同時選舉의 범위와 選舉日을 規定함(案 第198條).

(43) 同時選舉時 選舉人名簿와 投票카드는 하나의 選舉人名簿와 하나의 投票카드를 사용하도록 함(案 第199條 및 第206條).

(44) 同時選舉에 있어 같은 政黨의 추천을 받은 2人이상의 候補者는 選舉運動機構 및 選舉事務關係者를 共同으로 設置·選任할 수 있으며, 政黨·候補者등에 의한 演說會를 共同으로 개최할 수 있게 함(案 第200條 및 第203條).

(45) 選舉犯罪의 樣態에 따라 刑量을 差等 適用함(案 第16章).

(46) 政黨·會社 기타 法人·團體가 違法行爲 主體인 경우 兩罰規定을 新設함(案 第254條).

(47) 節次違反등 경미한 違反事項에 대하여는 過怠料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案 第255條).

(48) 타락선거와 관련된 選舉犯罪로 인한 當選無效의 連帶責任의 범위를 확대하여

選舉費用制限額의 200분의 1을 超過支出하여 選舉事務長 또는 會計責任者가 懲役刑을 宣告받은 때에는 그 候補者의 當選을 無效로 하고, 候補者의 直系尊·尊屬 및 配偶者, 選舉事務長, 選舉連絡所長 또는 會計責任者가 買收 및 利害誘導罪, 多數人에 대한 買收 및 利害誘導罪, 候補者에 대한 買收 및 利害誘導罪, 當選人에 대한 買收 및 利害誘導罪, 當選無效誘導罪, 放送·新聞등의 不法利用을 위한 買收罪와 寄附行爲의 금지제한 등의 違反罪를 범함으로 인하여 懲役刑의 宣告를 받은 때에는 그 候補者의 當選은 無效로 함(案 第257條 및 第259條).

나. 第2案의 主要骨子

- (1) 이 법은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에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위 각 선거의 선거관리에 형평을 유지하고 후보자와 국민들이 선거에 관한 규범을 쉽게 숙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 (2) 국민의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하여, 공무원·학생 또는 다른 사람에게 고용된 자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거나 투표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은 휴무 또는 휴업으로 인정할 수 없도록 하고,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은 공휴일로 하도록 함(안 제6조, 제34조제2항).
- (3) 선거관리위원회는 사회단체가 선거부정을 감시하는 등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하는 것을 보호하고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되, 공명선거추진 사회단체가 공정성을 잃거나 특정정당 또는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게 하여 감독하도록 함(안 제10조).
- (4) 국민의 참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선거권자 연령을 18세로 낮추고, 국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피선거권자 연령을 25세이상으로 함(안 제16조).
- (5) 선거범죄로 벌금 100만원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을 제한하되, 선거권의 경우 그 제한기간을 벌금·집행유예는 2년, 징역은 6년으로 확대하고, 피선거권의 경우 그 제한기간을 벌금·집행유예는 6년, 징역은 10년으로 확대함(안 제18조, 제19조).

- (6) 지역구국회의원과 시·도의회의원의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의 경우 현행 제도를 유지함(안 제21조제2항, 제22조제3항, 제23조).
- (7) 지역구국회의원과 시·도의회의원의 선거구획정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회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두되,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위원은 9인으로 하여 모두 국회에서 선출하고 당해 의원임기개시후 3년이내에 선거구획정안을 제출하도록 하며 국회는 그 의견을 존중하도록 함(안 제24조)
- (8) 현행 전국구국회의원제도를 헌법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비례대표제로 하고, 정당투표제도를 도입하여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국회의원총선거)에 있어서는 제1투표는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에게, 제2투표는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를 낸 정당에 투표하도록 하되 투표용지는 절취선을 두어 1매를 사용하도록 하고, 정당투표의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의 의석을 배분하도록 함. 다만, 5% 봉쇄조항제도를 도입하여 정당투표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득표하거나 지역구국회의원총선거에서 3석이상의 의석을 얻은 정당에 한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을 배분토록 함(안 제20조제1항, 제143조제2항, 제147조제2항, 제148조제1항 단서, 제186조).
- (9) 선거기간을 단축하여, 대통령선거는 25일, 국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는 각 17일, 지방의회의원선거는 15일로 함(안 제33조제1항).
- (10) 선거일을 법정화하여, 대통령선거는 그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에,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선거는 각 그 임기만료일전 50일 이후 첫번째 수요일로 하여 공휴일로 정하되, 위의 선거일이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선거일 전일이나 그 익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다음주의 수요일로 함(안 제34조).

-보궐선거와 재선의 선거일은 모두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부터 50일이후 첫번째 수요일로 함(안 제 35조).

(11)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을 법정화하여,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30일, 국회의원선거·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선거에 있어서는 선거일전 25일로 하고, 5일 이내에 선거인명부를 작성하도록 함(안 제37조).

(12) 부재자신고는 위의 선거인명부작성기간중에 하도록 하고 부재자신고인명부를 따로 작성하여 거소투표자는 그 비교란에 이를 표시하도록 함(안 제38조).

(13) 자치구·시·군의 장 및 자치구·시·군의회의원의 선거에도 정당추천제를 도입함(안 제47조제1항).

(14)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추천에서 여성할당제를 도입하여 추천후보자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여성후보자로 하도록 함(안 제47조제2항).

(15) 각 선거의 후보자등록시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 규정에 의한 등록대상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등록무효가 되도록 함(안 제49조제4항, 제52조제1항제3호).

(16) 공무원 등이 입후보할 경우 선거일전 90일에 그 직에서 사임하도록 하되,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의 경우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이 각 그 직(그 직과 겸직이 허용되는 직을 포함한다)을 가지고 입후보할 수 있도록 함. 다만, 이 법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공무원 등이 입후보할 경우 선거일전 30일에 그 직에서 사임하도록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장직에 있는 공무원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입후보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까지 그 직에서 사임하도록 함

(안 제53조, 부칙 제2조제3항 및 제4항).

(17) 헌법 제116조제2항의 취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선거공영제를 확대함(안 제56조).

가. 어느 경우어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절대적 공영비용)

- (1) 선전벽보의 제작·첩부·철거비용
- (2) 합동연설회 개최비용
- (3) 선거공보의 제작·발송비용
- (4) 전단형 소형인쇄물 1종의 제작·발송비용
- (5) 투표안내문(안 제150조)의 제작·발송비용
- (6) 투표참관인 및 개표참관인의 수당 등

(7) 기타 부재자신고우편요금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선거관리를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모든 비용

나. 일정기준이상 득표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상대적 공영비용)

-아래 비용은 대통령선거·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는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 지역구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선거에서는 유효투표총수를 후보자수로 나눈 수의 2분의 1 이상을 득표하지 못한 때,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자가 없는 때에는 기탁금에서 공제하고 부족액은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후보자의 재산에서 징수함.

(1) 책자형 소형인쇄물 1종의 제작·발송비용(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

(2)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비용중,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방송연설(TV·라디오) 각 3회 및 연설회 방송연설 각 2회,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방송연설 각 1회,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정당별 후보자대표 2인의 방송연설 각 1회, 시·도지사선거에 있어서 후보자방송연설 각 2회의 비용

(18)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되는 경우 이외에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선거법의 선거운동 주체에 관한 법정선거운동원 제도과 선거운동방법에 관한 포괄적 금지규정을 폐지함(안 제58조제2항).

(19) 통·리·반의 장과 향토예비군 소대장급이상의 간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정부의 출연·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 임직원과 이들 단체의 중앙회장, 의료보협조합의 임직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하고, 통·리·반의 장과 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가 선거사무원, 연설원 등이 되고자 할 때에는 선거일전 90일에 사임하여야 하며 선거일 후 2년 이내에 중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도록 함(안 제60조).

(20) 자원봉사자에 의한 선거운동을 주종으로 하고, 수당과 실비를 지급받는 유급선거 사무원은 다음과 같이 제한함(안 제62조).

(1) 대통령선거

선거사무소에 시·도 수의 5배수이내 시·도 선거연락소에 당해 시·도안의 구·시·군(하나의 구·시·군이 2이상의 국회의원지역구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구를 말한다)수에 상당하는 수이내(구·시·군이 10개 미만인 때에는 10인), 구·시·군 선거연락소에 당해 구·시·군안의 읍·면·동 수에 상당하는 수이내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두는 구·시·군의 관할구역안의 읍·면·동 수의 2배수이내

(3)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선거사무소에서 시·도 수의 2배수이내

(4) 시·도회의원선거

선거사무소에 7인이내

(5) 시·도지사선거

선거사무소에 구·시·군의 2배수이내(구·시·군수가 5개 미만인 때에는

10인이내), 구·시·군 선거연락소에 읍·면·동 수이내

(6)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
선거사무소에 5인이내

(7)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두는 구·시·군의 관할구역안의 읍·면·동수의 2배수이내

(21) 소형인쇄물에는 정견·정책이외에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종류를 다음과 같이 제한함(안 제66조).

(1) 대통령선거,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

전단형 소형인쇄물(길이 38센티미터, 너비 27센티미터 또는 길이 54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이내에서 1매를 말하며, 양면게재 가능) 2종이내, 책자형 소형인쇄물(길이 27센티미터, 너비 19센티미터이내에서, 대통령선거 16면이내,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선거 8면이내) 1종

명함형 소형인쇄물(길이 10센티미터, 너비 6센티미터이내에서 1매를 말하며, 양면게재 가능) 1종

(2) 지방의회의원선거

전단형 소형인쇄물 2종이내, 명함형 소형인쇄물 1종

(22) 현수막은 존치하며, 표찰·어깨띠·수기 등은 대통령선거에 한하여 허용함(안 제67조, 제68조).

(23) 신문광고와 방송광고는 대통령선거와 시·도지사선거에 한하여 허용함(안 제69조, 제70조).

(24) 후보자 등의 방송연설을 다음과 같이 허용함(안 제71조).

(1) 대통령선거

후보자와 연설원이 각 1회 20분이내에서 텔레비전과 라디오 각 5회이내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자가 1회 3분이내에서 텔레비전과 라디오 각 1회(지역방송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방송에서 실시)

(3)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정당별후보자대표 2인이 1회 10분이내 텔레비전과

라디오 각 1회

(4) 시·도지사선거

후보자가 1회 10분이내에서 텔레비전
과 라디오 지역방송시설로 각 2회

(25) 방송시설 경영자는 자체부담으로 후
보자연설을 방송할 수 있도록 함(안
제72조).

(26) 합동연설회를 존치하고(대통령선거 제
외),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벽보와 고
지방으로 이를 홍보하도록 함(안 제
74조).

(27) 정당·후보자연설회를 다음과 같이
허용하고, 연설회장에서 후보자와 연설원
은 녹음기 또는 녹화기(비디오 포함)를
사용할 수 있으나, 연예활동은 금지함
(안 제76조)

(1) 대통령선거

1회 5시간이내에서 구·시·군마다 5
회이내

(2) 지역구국회의원과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1회 4시간이내에서 선거구마다 5회이
내

(3) 시·도지사선거

1회 4시간이내에서 구·시·군마다 5
회이내

(4) 지방의회의원선거

1회 2시간이내에서 선거구마다 3회이
내

(5) 연설회의 공동개최

정당, 후보자, 선거사무장은 2이상의
구·시·군 또는 2이상의 선거구에
걸쳐 한 장소에서 연설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설회시간은 1
회 5시간이내로 하고 비용분담 내용
을 연설회신고서에 명시하도록 함.

(28) 공개좌담회제도를 신설함(안 제77조)

현행법의 당원단합대회는 “사랑방좌담회”
라는 이름아래 비당원을 상대로 금품살
포의 기회로 악용되어 왔으므로 선거개
시일전 30일부터는 이를 제한하고, 선거
권자의 자유로운 출입이 허용되어 감시
가 가능한 공개좌담회를 신설하여 대체
함.

공개좌담회는 후보자와 그 배우자가 관

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후 공공시
설 기타 공개된 장소(정당의 사무실,
선거사무소, 후원회사무소는 제외)에서
당해 선거구내 투표구 수의 2분의 1이
내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함.

(29) 정당, 후보자 등은 학교, 역광장, 주
민회관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 또는 관리하는 시설을 연설회, 공
개좌담회의 장소로 무료사용할 수 있도
록 함(안 제78조).

(30) 거리연설·대담에 확장장치 1식과 자
동차 1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79조) 후보자(대통령선거와 시·도지사
선거에서는 후보자가 구·시·군 선거연
락소마다 지명한 1인을 포함한다)는 도
로변, 시장, 대합실, 공원 기타 다수인
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를 방문하여
연설, 대담을 할 수 있으며 확장장치는
자동차가 정지된 상태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함.

(31) 후보자초청토론회를 신설함(안 제81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보조를 받
는 단체 등을 제외한 단체는 2인이상
의 후보자를 초청하여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함.

(32) 언론기관초청토론회제도를 신설함(안 제
82조)

텔레비전방송국, 라디오방송국, 일간신문
사 등 언론기관은 자체비용으로 2인이
상의 후보자를 초청하여 토론을 개최하
고 이를 보도할 수 있도록 하되, 초청
대상에서 국회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추천후보를 배제할 수 없도록 함.

(33) 공무원의 지위나, 교육적, 종교적 또
는 직업적 특수관계에서의 지위를 이용
한 선거운동을 금지함(안 제85조).

(34) 공무원, 정부·지방자치단체투자기관의
상근임직원, 통·리·반의 장, 향토예비
군의 소대장급이상의 간부, 의료보험조합
의 임직원,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국
민운동단체로서 정부의 출연·보조를 받
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새마을운
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의 상근임직원
과 중앙회장은 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
하여도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거나 선거기간중 정상업무 이외의 출장 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86조)

(35) 단체는 사단·재단 기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기간중에 그 명의로, 또는 그 대표자의 명의로 선거구민에게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이를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함(안 제87조).

(36) 녹음기와 녹화기(비디오 포함)는 정당·후보자연설회, 공개좌담회, 거리연설·대담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함(안 제100조).

(37) 정당·후보자연설회, 거리연설·대담, 후보자초청토론회는 야간(오후 11시부터 오전 6시까지)에 개최할 수 없도록 함(안 제102조).

(38) 선거기간중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단합대회, 향민회, 야유회, 종친회 또는 동창회 기타의 집회를 개최할 수 없으며, 반상회를 선거기간중 개최할 수 없도록 함(안 제103조).

(39) 호별방문은 금지하되, 소형인쇄물의 호별투입과 관혼상제의식이 거행되는 장소나 시장, 점포 등 다수인이 왕래하는 장소방문은 허용함(안 제106조, 제66조제10항).

(40) 여론조사의 제한(안 제108조)
누구든지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관한 지지나 당선인을 예상하는 여론조사의 결과를 공표할 수 없도록 하고, 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투표용지 유사모형을 사용하거나 정당 또는 후보자명의를 밝혀 할 수 없도록 함.

(41) 의정활동보고의 제한(안 제111조)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의원은 선거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 보고회나 보고서를 통하여 의정활동 또는 시·도정, 시·군정활동(선거구활동 기타 업적홍보 포함)을 할 수 없도록 함.

(42) 기부행위의 제한(안 제112조 내지 제117조, 제253조)
선거일전 1년부터 선거일까지(보궐선거

등에서는 그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선거일까지)는, 정당,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후보자의 가족(배우자, 후보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 및 후보자의 직계비속·형제자매의 배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선거사무원 등은 선거구민이나 선거구내에 있는 단체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선거구 밖에 있는 선거구민의 연고자에 대하여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고, 그 밖의 사람 또는 단체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나 그 추천정당을 위하여 하는 기부행위를 금지함(후보자 또는 그 추천정당의 명의로, 또는 그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기부행위는 선거에 관한 기부행위로 본다).

그러나, (1)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에서 의례적 범위내의 축의금 또는 부의금을 제공하는 행위, (2) 선거기간개시일전에 정당의 당사를 방문하는 자나 선거일 31일 이전에 개최하는 의정활동보고회 등 집회에서 참석자에게 “통상적 범위안의 다과나 음료(주류제외)”를 제공하는 행위, (3) 장학재단이 선거일 4년 전부터 정기적으로 지급하여 온 장학금을 지급하는 행위(다만, 기부행위제한기간중에 장학금의 금액과 대상 등을 확대하는 행위나 후보자 또는 그 추천정당의 명의를 밝히거나 그 명의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행위는 제외된다), (4) 기타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로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함. 기부행위를 하는 자는 물론 기부행위를 권유·요구하는 자와 기부를 받는 자에 대하여도 벌칙을 둬.

(43) 선거일 후 당선 또는 낙선인사는 벽보, 현수막, 거리연설·대담을 위한 자동차를 이용한 거리인사 이외에 당선 축하회, 금품, 향응제공, 신문광고 등을 할 수 없도록 함(案 제118조).

(44) 선거비용제한의 기초가 되는 “선거비

용”의 범위를 다음과 같이 규정함(案 제119조, 제120조).

- 이 법에서 “선거비용”이라 함은, 선거 활동을 위하여 소요되는 금품과 확정 채무 기타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당해후보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의 경우에는 그 추천정당을 말한다)가 부담하는 비용과 제3자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회계책임자와 통모하여 당해 정당 또는 후보자의 선거활동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하며, 이 경우 불법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과 후보자등록전의 선거활동을 위한 준비행위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하도록 함.

- 그러나, (1) 기탁금과 선거관리위원회·국가·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거나 지급하는 모든 납부금·수수료, (2)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전화료, 전기료, 수도료 기타의 유지비로서 선거기간전부터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출하여 온 경비(따라서, 전화선거운동으로 인한 요금과 선거기간전보다 늘어난 요금은 제외된다), (3)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연설원 및 회계책임자가 소유·승용하는 자가용 자동차의 운용비용, (4)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정당의 당사에 설치한 때에는 그 당사유지비용, (5) 제3자가 정당·후보자·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 또는 회계책임자와 통모함이 없이 선거운동을 위하여 지출한 전신료·자필서신우송료, (6) 정당의 후보자선출대회비용 기타 정당활동에 소요되는 정당비용과 무소속후보자가 선거권자의 추천을 받는데 소요되는 비용, (7) 선거일후에 지출원인이 발생한 잔무정리비용은, 이를 “선거비용”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

(45) 선거비용의 제한을 항목별 제한방식에서 “총액제한방식”으로 전환하고, 정당 또는 후보자가 지출할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을 다음과 같이 산정하되, 100만원 미만의 단수는 100만원으로 계

산하도록 함(案 제121조, 제122조).

(1) 대통령선거

50억원에 인구 1인당 150원을 가산한 금액

※ 인구 4,450만 기준 116억7천5백만원

(2) 지역구국회의원선거

2,000만원에 선거연락소마다 900만원과 당해 국회의원지역구의 인구 1인당 12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되, 인구 1인당 120원을 가산한 금액의 총액이 2,000만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2,000만원으로 한다.

※ 인구 20만 기준 4,400만원

(3) 시·도의회의원선거

800만원에 당해 선거구의 인구 1인당 12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되, 인구 1인당 120원을 가산한 금액의 총액이 500만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500만원으로 한다.

※ 인구 6만 기준 1,520만원

(4) 시·도지사선거

1억원(선거연락소를 설치할 구·시·군의 수가 10개를 넘는 시·도는 그 넘는 1개마다 1,000만원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에 선거연락소마다 1,000만원과 당해 시·도의 인구 1인당 100원을 가산한 금액

※ 서울 14억2천만원, 전남 7억6천만원

(5) 자치구·시·군의회의원선거

500만원에 당해 선거구의 인구 1인당 12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되, 인구 1인당 120원을 가산한 금액의 총액이 200만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200만원으로 한다.

※ 인구 1만5천 기준 700만원

(6) 자치구·시·군의 장선거

2,000만원에 선거연락소마다 900만원과 당해 자치구·시·군의 인구 1인당 12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되, 인구 1인당 120원을 가산한 금액의 총액이 2,000만원에 미달하는 때에는 2,000만원으로 한다.

※인구 20만 기준 4,400만원

(7)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결정

- 一위의 선거비용제한액은 이 법 시행년도를 기준으로 소비자물가지수 변동율을 감안하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정하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일 전 30일에 선거비용제한액을 공고하도록 함.
- (46)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은 회계책임자 또는 그 보조자가 반드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를 통하여 하도록 하고, 회계책임자는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선거비용의 모든 수입금액과 지출내역을 기재하고 지출에 관하여는 영수증 기타 증빙서류를 구비하도록 함(안 제127조, 제129조, 제130조).
- (47) 회계책임자는 선거일후 10일까지 선거비용을 정산하고 선거일후 15일까지 회계장부에 따라 작성한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보고서, 예금계좌거래내역서, 예금통장사본 등을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보고서제출 마감일로부터 3일 이내에 이를 공고하고 6월간 선거인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며, 열람인은 수입과 지출보고서 내용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8조, 제131조 내지 제133조).
- (48)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수입과 지출보고서의 허위여부를 규명하기 위하여, 회계장부 등 서류를 열람하거나 금융기관 등 관계인에게 질문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위법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고발·수사의뢰·기타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4조).
- (49) 정당의 정책광고 등은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기간 개시일 전까지는 일간신문 등에 총 100회이내로 제한하며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은 게재할 수 없도록 함(안 제137조)
- (50) 정당은 선거기간중에 “당원용” 정책홍보물을 소속당원에 배부할 수 있되, 그 종류는 대통령선거의 경우 책자형 홍보물과 전단형 홍보물 각 2종, 지역구국회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선거의 경우 책자형 홍보물과 전단형 홍보물 각 1종으로 제한함(안 제138조).

- (51) 정당은 선거기간중 통상적 주기로 기관지를 발행하여 소속당원에게 배부할 수 있되 통상적 주기가 2회미만인 때에는 2회 발행할 수 있고, 미리 선거관리위원회에 납본하여야 하며 거리배부 등은 할 수 없도록 함(안 제139조).
- (52) 정당은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에 정당대회, 합당대회, 개편대회, 후보자선출대회 등을 하는 경우 당원과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의 비당원 초청자만을 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참석당원과 내빈에게 통상적인 범위 안에서 식사, 다과, 음료(주류제외)와 염가의 정당배지, 마스코트 등을 제공하거나 교통이 불편한 장소의 당원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안 제140조).

(53) 당원단합대회 등의 제한(안 제141조 제1항 내지 제5항)

정당의 당원단합대회, 당원연수회는 선거기간개시일전 30일부터 선거일까지에는 개최할 수 없도록 하고,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기간개시일전 31일까지 사이에는 각급 당부별로 5회이내로 그 당부의 관할구역 안에서 개최하되 중앙당과 시·도지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간부와 유급사무직원, 지구당과 구·시·군연락소의 경우에는 당해당부의 관할구역 안의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여야 하며, 개최일전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신고하고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또는 그 대리인이 임회하도록 함.

위의 경우, 중앙당과 시·도지부 당원단합대회 등에서는 통상적 범위내에서 식사·다과·음료(주류제외)와 교통편의 또는 그 실비보상, 교재와 정당배지, 마스코트를 제공할 수 있고, 지구당 등 당원단합대회에서는 다과, 음료(주류제외), 교재와 정당배지, 마스코트를 제공할 수 있되, 온천장, 관광지, 유흥시설을 갖춘 장소 등에 초대할 수 없으며

이 경우에는 기부행위로 보도록 함.

(54) 정당은 선거기간중에는 당원을 모집하거나 입당원서를 배부할 수 없도록 함(안 제141조제6항).

(55) 정당은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전 1년부터는 유급당원을 증원할 수 없으며, 선거기간중 지구당의 유급당원은 5인을 초과할 수 없고 유급당원의 교체는 최초의 선임을 포함하여 10인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안 제141조 제7항)

(56) 선거는 기표방법에 의한 투표로 하도록 함(안 제143조).

(57) 투표통지표제도를 폐지하고, 투표안내문을 세대별로 선거공보와 함께 우송하도록 함(안 제150조)

투표안내문에는 세대별 선거인의 성명, 투표소의 위치, 투표할 수 있는 시간, 투표시 지참할 물건과 투표참여를 권유하는 문언을 기재하도록 함.

(58) 투표시간을 선거일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로 2시간 연장하고, 부재자투표소의 경우 선거일전 7일부터 선거일전 4일까지 매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투표하도록 함(안 제152조, 제145조제1항).

(59) 부재자투표용지가 반송되어 부재자투표용지를 받지 못한 부재자신고인은 선거일에 주소지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되, 이 경우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는 투표용지가 반송된 부재자신고인명부와 대조·확인하도록 함(안 제153조, 제151조제2항).

(60) 투표절차를 개선하여 선거인은 기표소에서 투표용지에 기표한 후 이를 보이지 아니하도록 접은 다음 투표참관인 앞에서 번호지를 떼어 투표참관인에게 제시한 후 투표지는 투표함에, 번호지는 번호지함에 넣도록 하여 세칭 '릴레이투표'의 소지를 제거함(안 제154조제4항).

(61) 개표사무원은 법원공무원, 교원과 금융기관 직원중에서 위촉하도록 함(안 제171조).

(62) 비례대표국회의원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이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이상의 정당의 당원이 된 때에는 퇴직되도록 함(안 제189조제4항).

(63) 보궐선거(대통령선거 제외)는 잔여임기가 1년미만인 경우에는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8조).

(64) 동시선거의무화규정을 두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의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이 서로 90일안에 있는 경우 등에는 법정선거일에도 불구하고 동시선거를 실시하도록 함(안 제199조).

(65) 동시선거에 있어서는 하나의 선거인명부·부재자신고인명부·투표안내문을 사용하고, 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선거사무소, 선거사무원 등을 공동으로 설치·선임할 수 있도록 하며, 합동연설회·투개표참관인을 축소하는 등의 특례를 규정함(안 제201조 내지 제214조).

(66) 선거범죄중 금품선거, 선거자유방해에 관련된 범죄 등의 형량을 상향조정함(안 제226조 내지 제230조, 제233조 내지 제242조).

(67) 허위사실공표죄에 있어서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물론 그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공표한 경우에도 포함되도록 함(안 제246조).

(68) 후보자비방죄의 구성요건 등을 개선함(안 제247조)

- 선거는 후보자의 정치적 공과를 심판하는 것이 주요한 기능의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의 후보자비방죄는 후보자의 공적활동이나 사생활을 가리지 아니하고 진실한 사실로 정치적 과오를 지적하는 경우까지 모두 처벌대상이 되게 하여, 정치적 비판까지 봉쇄하는 독소조항으로 작용

- 후보자비방죄의 구성요건을 공언히 사생활의 비밀을 적시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여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비방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위의 경우에도 그 사실이 진실한 사

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 그리고 진실한 사실의 공개 또는 해명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처벌하지 아니하도록 개선함.

(69) 미수범규정을 신설함(안 제256조)

- 현행법은 모든 선거범죄에 미수범규정을 두지 아니하여 매표자금을 선거권자에게 교부하는 현장을 적발한 경우에도 선거권자가 수령하기 전이면 처벌할 수가 없어서 금품선거 단속은 항상 빙산의 일각에 불과

- 제226조(매수및이해유도죄) 내지 제230조(당선무효유도죄), 제253조(기부행위의 금지제한등위반죄)제1항, 제242조(다수인의 선거방해죄)제1항 등 미수범처벌이 절실한 경우에는 미수범처벌규정을 둬.

(70) 절차위반 등 경미한 사항은 형사처벌 대신에 과태료에 처하도록 함(안 제257조).

(71) 자수자에 대한 특례규정을 두어 금품 등을 받은 자가 금품제공을 유도하는 등 사위의 방법을 사용한 경우가 아니면 금품 등을 받은 자가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면제하도록 함(안 제258조).

(72)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서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징역 또는 100만원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함(안 제260조).

(73) 금품선거관련 선거범죄에 대한 후보자의 연대책임으로 인한 당선무효 범위를 확대함(안 제259조, 제261조).

선거사무장 또는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선거비용제한액을 초과지출하여 안 제254조의 죄(선거비용부정지출등의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때,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와 후보자의 배우자, 후보자의 직계존비속이 당해 선거에 있어서 안 제226조(매수및이해유도죄) 내지 제230조(당선무효유도죄) 또는 제253조(기부행위의제한·금지등의위반죄)제1항중 기부행위를 한 죄를 범하여 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후보자(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는 제외)의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함.

(74) 이 법에 규정된 죄의 공소시효는 선거일후 1년으로 하되, 범인이 도피한 때에는 그 기간은 3년으로 함(안 제263조).

(75) 허위사실공표죄, 성명등의 허위표시죄에 해당하는 불법선전물에 대한 우송금지제도를 규정함(안 제267조).

(76) 선거범죄에 대한 재정신청제도를 규정함(안 제268조).

- 금품선거방지를 위한 선거범죄의 형량강화, 선거범죄로 형을 받은 자의 참정권 제한의 장기화, 선거비용제한액의 대폭 축소, 선거범죄에 대한 후보자의 연대책임 범위확대 등이 법에서 규정한 모든 제재는 선거범이 기소되어 형을 받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선거범죄를 반드시 소추하도록 강제하는 제도개혁이 필수적임.

- 선거범죄에 대한 소추를 강제하기 위하여, 선거범죄를 고소·고발한 자는 검사의 불기소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그 검사소속의 검찰청을 경유하여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형사소송법의 재정신청규정을 적용하여 재정신청이 이유있을 경우 고등법원은 그 사건을 재판에 회부하고 지정변호사(특별검사)로 하여금 공소유지를 하도록 함.

선거범죄의 단기공소시효(1년)로 인하여 재정신청제도가 유명무실하여질 것에 대비하여, 재정신청서가 그 검사소속의 검찰청에 접수된 때로부터 고등법원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되도록 하고, 검사가 고소장·고발장을 접수한 날부터 6월이내에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또는 공소시효 만료일전 10일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그때 검사의 불기소통지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재정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77) 이 법시행후 최초로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 있어서는 피선거권에 관한 거주요건을 완화하여 선

저기간개시일 현재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자는 피선거권이 있도록 하고, 이 법 시행후 최초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의 실시시기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에 의하도록 함(안 부칙 제2조제1항, 제5조제1항).

4. 檢討意見

두 法律案은 大統領, 國會議員, 地方自治團體의 議會議員 및 長등 選舉職 公職者의 選舉에 통일적으로 適用될 수 있는 單一法을 制定함으로써 選舉管理의 통일을 圖謀하는 한편 選舉의 공정성과 選舉의 不正 防止를 위하여 第1案은 “公職者選舉및不正防止法”, 第2案은 “公職選舉法”으로 각각 提案되었습니다.

먼저 選舉權과 被選舉權에 있어서 選舉權者의 年齡을 第1案은 20歲, 第2案은 18歲로 하고 있으며(第1·2案: 第15條), 第1案은 法定選舉費用을 超過支出함으로써 選舉事務長등 選舉運動關聯者가 選舉犯罪로 懲役刑을 宣告받은 때에는 當選을 無效로 함은 물론 選舉權과 被選舉權을 10년동안 박탈함으로써 選舉의 공정성을 期하고 있습니다(案第18條, 第19條).

둘째, 選舉區域에 있어서 第1案은 모든 公職選舉에 小選舉區制를 채택하고 있으며(案第20條), 第2案은 현행대로 國會議員選舉는 小選舉區制, 地方議會議員選舉는 中選舉區制를 유지하고 있습니다(案第21條 내지 第23條).

그리고 第1·2案은 選舉區劃定委員會制度를 導入하였습니다(第1·2案: 第24條).

셋째, 第1·2案은 選舉期間을 단축하고 選舉日을 法定化함으로써 選舉日程을 둘러싼 論難의 餘地를 없었습니다(第1·2案: 第33條, 第34條).

넷째, 選舉運動에 있어서 第1·2案은 選舉運動方式을 중전의 포괄적 制限, 禁止 方式(大統領選舉法 第35條, 國會議員選舉法 第40條)에서 개별적 制限, 禁止 方式으로 전환하여 制限 내지 禁止하는 選舉運動 이외에 모든 方法을 許容하고 있습니다.

選舉運動의 主體에 있어서도 第1·2案은 公務員이나 사실상 公務員에 준하는 者를 除外하고는 選舉運動을 할 수 있도록 대폭 완화하고 있으며, 극소수의 事務員에게만 手當과 實費의 지급을 許容하고 있습니다.(第1·2案: 第60條, 第62條).

구체적인 選舉運動方法에 있어서 印刷物등 油印物의 種類와 數를 대폭 줄였으며, 이의 街頭配布와 戶別投入을 第1案은 禁止, 第2案은 許容하고 있으며(第1·2案: 第66條),

懸垂幕과 放送廣告 및 合同演說會에 대해서도 第1案은 廢止, 第2案은 許容하고 있고(第2案: 第67條, 第70條, 第74條),

第1·2案은 候補者의 招請 對談·討論會 制度를 導入하고 있으나 第1案은 屋內에서, 第2案은 공개된 場所에서의 實施를 許容하고 있으며(第1案: 第77條, 第2案: 第81條),

그외에 第2案은 公開座談會制度, 거리연설, 對談制度 및 言論機關 招請 討論制度를 導入하고 있습니다(案第77條, 第79條, 第82條).

다섯째, 選舉費用에 있어서 第1·2案은 選舉費用의 制限을 費目別 制限 方式(國會議員選舉法 第79條)에서 總額制限方式으로 轉換하고(第1案: 第114條, 第2案: 第119條),

第1·2案은 法定選舉費用을 大統領選舉는 116억원, 國會議員選舉는 4,500여만원, 市·道議會議員選舉는 1,400여만원등으로 最少化하고 있으며, 國家와 地方自治團體가 負擔하는 法定選舉費用을 擴大하고 있습니다(第1案: 第65條, 第66條, 第116條, 第2案: 第56條, 第121條).

또한 選舉費用 公開義務와 選舉管理委員會에 會計監查權, 調查權등을 賦與함으로써 公正選舉管理를 위한 選舉管理委員會의 權限을 強化하고 있습니다(第1案: 第128條, 第129條, 第2案: 第133條, 第134條).

여섯째, 投·開票의 方式에 있어서 第1案은 電算化 方式을 導入하고 있으나 第2案은 現행 方式을 固守하고 있습니다(第1·2案: 第10章, 第11章).

일곱번째, 全國區國會議員選舉制度에 있어서 全國區議席配分基準을 第1案은 “得票比率”로, 第2案은 1人 2投票制를 導入하여 “政黨

投票의 得票比率”로 하도록하고 있으며(第1案：第184條, 第2案：第186條),

全國區國會議員이 黨籍을 離脫, 變更할 경우의 議員職 退職 要件을 第1案은 合黨, 解散 또는 除名의 경우로 限定한 반면 第2案은 合黨, 解散 또는 除名 이외의 事由로 規定하고 있으며(第1案：第187條, 第2案：第189條),

그외에 第2案은 全國區國會議員 候補者 推薦에 있어서 女性割當制를 導入하여 推薦 候補者數의 100분의 20 이상을 女性候補者로 하도록 定하였습니다(案第47條).

여덟번째, 第1·2案은 地方自治團體의 長과 議會會議員에 대한 同時選舉 特例 規定을 設置하여 빈번한 選舉의 實施로 인한 國力浪費를 豫防하였으며(第1·2案：第14장),

아홉번째, 罰則에 있어서 第2案은 買收·利害誘導罪, 當選無效誘導罪 등에 대한 未遂犯處罰 規定을 新設하여 選舉事犯 處罰을 強化하였고(案 第256條),

열번째, 第1·2案은 當選無效事由에 選舉費用制限額을 超過한 경우와 選舉運動從事者 및 候補者의 直系 尊·卑屬과 配偶者의 選舉法 違反行爲도 追加함으로써 公정한 選舉를 圖謀하고 있습니다(第1案：第257條, 第259條, 第2案：第259條, 第261條).

마지막으로 第2案은 選舉事犯에 대하여 檢事가 公訴를 提起하지 않을 경우 高等法院에 裁定申請을 할 수 있는 制度를 두고 있습니다(案 第268條).

이상으로 檢討報告를 마칠것습니다.

○委員長 申相式 이들 法案은 이미 合意된 대로 第1審議班에 회부하여 審議토록 하겠습니다.

7. 政治關係法改正에 관한請願(姜信玉議員의 紹介로 提出)

(14時51分)

○委員長 申相式 다음은 議事日程 第7項 政治關係法改正에 관한請願을 上程합니다.

報告事項에서 들으신 바와같이 鍾路區 梨花洞 121번지 서영훈외 3인이 姜信玉議員의 紹介로 提出한 政治關係法改正에 관한請願은 關係法案을 審議중인 第1審議班에 회부하여 審査토록 하겠습니다.

請願 內容은 배부해 드린 油印物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會議를 마칠것습니다.

散會를 宣布합니다.

(14時53分 散會)

○出席委員

申 相 式	姜 信 玉	金 榮 駟
金 榮 珍	朴 憲 基	朴 煥 太
白 南 治	黃 潤 鎰	姜 秀 淋
朴 相 千	李 永 權	鄭 均 桓
諸 廷 坵	洪 思 德	曹 駟 鉉
車 秀 明		

○出席專門委員 및 立法審議官

專 門 委 員	韓 世 東
立 法 審 議 官	朴 奉 國
立 法 審 議 官	申 世 華

【報告事項】

○議案回附

政黨法中改正法律案

(11月16日 申相式議員外 171人 發議)

政治資金에 관한法律中改正法律案

(11月16日 申相式議員外 171人 發議)

選舉不正防止法案

(11月16日 申相式議員外 171人 發議)

이상 3件 11月16日 回附됨

公職選舉法案

(11月26日 趙世衡議員外 95人 發議)

11月26日 回附됨

○請願回附

政治關係法改正에 관한請願

(11月17日 서울시 鍾路區 梨花洞 121番地 서영훈외 3人으로부터 姜信玉議員의 紹介로 提出)